

공증인법 개정안 설명

이 건 태

법무부 법무과장

※편집자 주 : 법무부가 2007. 12. 14.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공증인법 개정 공청회”와 관련하여, 공증인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공청회 자료집 내용 전부를 법무부와 각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의 양해를 구하여 본지에 전재합니다. 다만, 본지에 게재된 발표·토론 문 중 일부는 해당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의 요청으로 약간의 수정된 원고로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I. 추진개요

1. 공증제도의 의의와 기능

- 공증제도는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증거를 만들어 줌으로써 법률생활의 명확성을 조력해 주고, 사후적인 분쟁을 방지하며, 나아가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임
- 이와 같이 공증제도는 개인간의 법률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이른바 「예방사법」의 기능과 더불어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음
- 근대적 공증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약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공증제도는 놀라울 정도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는바, 이 같은 토대 위에서 이제부터는 공증제도의 질적 성장을 추구할 시점임

2. 공증인법의 연혁과 제도의 발전

- 1913년 3월 제정된 조선공증령에 의하여 근대적인 공증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

되었으나, 이는 일본의 공증인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것으로서 우리의 독자적인 제도는 아니었음

- 광복이 된 후, 구법령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1961년 9월에 비로소 우리나라의「공증인법」이 제정되었고, 형식이나 내용에 그다지 큰 변화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공증인법 제정 당시에는 공증인 수가 전국에 10여명에 불과하여 국민에 대한 공증서비스의 제공은 미미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그 후로 몇 차례 관계법령의 정비로 공증영역의 확대, 공증인 수의 급증 등을 가져와 우리나라의 공증제도는 놀라울 정도의 양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음
- 그 첫 번째는 1970년에 제정된「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따라 변호사들이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아 공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어음·수표 공정증서에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부여하였으며, 두 번째는 1982년 12월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도입된 법무법인에 대하여 공증인의 직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음
-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은 변호사 업무와 더불어 공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이른바「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로서,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하여 공증서비스 공급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공증수요도 더불어 증가하여 우리나라 공증제도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음

구분 연도	공증인수(명 또는 개소)				만수처리 (만건)	비고
	계	임명	합동	법인		
1962	16	16			-	처리건수 자료 없음
1967	20	20			-	"
1972	54	22	32		45.3	
1977	68	22	46		100.2	처리건수는 76년 자료
1982	98	23	75		276.1	
1987	113	18	74	21	385.5	
1992	124	10	80	34	362.9	
1997	199	12	81	106	334.5	
2002	284	15	76	193	398.8	
2007	377	30	67	280	336.2	11월 말 기준 자료

3. 공증인법 개정의 배경

- 이와 같이 공증제도가 눈부신 양적 성장을 가져왔으나, 우리의 공증제도에는 하루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몇 가지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임
- 첫째, 공증 관련법의 이원화로 인하여 법체계의 통일성, 제도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

음, 즉 공증인제도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공증인법에는 임명공증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 겸업 공증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공증의 근거법이 이원화 되어 있고, 양자간의 자격, 관리감독 체계 등도 상이한 상태이므로 이를 통일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둘째, 공증인들의 전문성·책임성·윤리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공증인의 지나친 고령화 또는 변호사 업무와의 병행으로 인하여 공증보조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공증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이들이 공증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증사무소가 일부 지역에 지나치게 집중됨에 따라 공증사무소간의 사건 유치경쟁이 치열하여 수수료 덤핑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셋째, 공증인법 제정 이후 4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공증과 관련한 사회적 수요가 다양해졌고, 특히 IT 기술의 비약적 발달과 전자거래의 급증 등 기존의 공증제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생겨나고 있어 하루 속히 이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유일한 공증인단체인 대한공증협회가 임의 가입단체로 되어 있어, 전체 공증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공증인들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번 공증인법 개정안에는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다각도로 연구·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자 하였음

4. 그간의 추진 경과

- 법무부는 공증인법 개정을 위하여 2005년 11월부터 대한공증협회 등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공증인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선별하고 개별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음
- 그 후,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법무부『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산하에「공증제도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계·실무계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음
- 나아가 2007년 9월부터는 전자공증·선서인증 등 외국의 입법례들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였음
- 이와 같은 작업을 바탕으로 2007년 11월에 공증인법 개정안(시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들을 청취하였음

5.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공증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공증법 체계의 일원화
 -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법무법인 등)을 공증인법에서 일괄 규정
 - 공증인 임명 및 인가 기준 등 강화
- 둘째, 공증인 관리감독 체계 정비
 - 공증인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 부여
 - 공증협회를 강제단체화 하고, 교육권 등 일부를 위임
- 셋째, 새로운 공증제도 도입
 - 전자거래 활성화 등 현실적 수요를 반영하여 전자공증제도 도입
 - 인증문서의 증거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서인증제도 도입

II. 공증인 체계의 일원화

1. 공증 관련 법률체계의 일원화

■ 검토배경

- 공증 관련 규정이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에 이원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현재 4종류의 공증인 유형 중 주류를 이루는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등은 변호사법에 규율되어 있음

(07.10.31 현재)	임명공증인	공증대행청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	계
사무소 수(%)	30(7.7)	13(3.3)	67(17.2)	280(71.8)	390
근거법률	공증인법		변호사법		

※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는 공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1970년에 도입되었다가 2005년에 폐지(현재는 경과규정에 따라 존속)

- 근거법률에 따라 공증인 또는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기준, 관리감독 등에 차등이 발생함

■ 개정방향

- 공증인을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증인법에서 함께 규정함
 - 임명공증인 :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공증인
 - 인가공증인 :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
- ※ 경과규정에 따라 현재 존속 중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포함
- 모든 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하여 공증인의 자격, 정년, 권리·의무, 징계 등 관리감독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임명공증인

■ 검토배경

- 공증인의 임명자격·정년 등에 대한 법률규정의 불비로 인하여 공증인으로서의 자질이나 건강 등이 공증사무를 담당하기에 적절한 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거의 없음
 - ※ 법무부는 「공증인임명지침」을 만들어 공증인 임명자격을 법조경력 10년 이상 및 70세 미만으로 규정·시행하였으나,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 현행의 임명
 - 재임명 차등 임기제(신규임명시 5년, 재임명시 3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개정방향

- 공증인 임명자격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자로 한정하여 경험이 풍부한 중견 이상의 법조경력자들이 공증을 맡도록 함으로써 적정하고 공정한 공증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함
- 최초 임명시 및 재임명시의 임기를 5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함
- 공증인법 제정 당시 규정되었던 정년 규정을 부활하되, 한국인의 평균연령, 여타 법조공무원의 임기, 공증사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을 75세로 정함
 - ※ 제정당시에는 정년을 70세로 규정하였다가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정년제를 폐지한 바 있음
 - ※ 한국인 평균수명은 2005년 기준으로 78.5세임
 - ※ 법조공무원의 정년은 대법원장·헌재소장 70세,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 65세, 판·검사 63세 등임
 - ※ 외국의 경우에도 통상 65~70세를 임명연령 상한 또는 정년으로 규정

3. 인가공증인

■ 검토배경

- 현행 변호사법은 설립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에 대해 공증사무 취급권한을 자동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공증사무소 난립과 과당경쟁, 변호사업무 병행에 따른 무단이석 등 부적정한 직무집행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개정방향

- 공증인가 제도를 신설함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법인 등”이라 함)이 공증사무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호사법상의 법무법인 등 설립인가와는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취득하도록 함

- 인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연장허가

※ 현재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아 공증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등에 대하여는 이를 개정법에 의한 공증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특례를 부칙에 마련

○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등을 강화함

-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을 통산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로 강화하여 임명공증인의 자격과 통일을 기함

※ 현행 변호사법이 법조경력 5년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개정안 부칙 경과규정에서 개정법 시행당시에 법조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인정

- 임명공증인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및 75세 이상인 자는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도록 규정함

○ 공증담당변호사 인원수를 법정화 함

- 인가공증인은 소속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을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함

○ 공증인가의 취소사유

- 공증담당변호사 수가 3개월 이상 2명에 미달하거나, 자격이 없는 변호사를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경우 등에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III. 공증사무의 적정성 확보

1. 공증인 교육제도 신설

■ 검토배경

○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공증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증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공증인 또는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을 담당하는 사례가 발생함

○ 공증협회에서 공증보조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시여부가 정기적이지 않고 의무도 아니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 왔음

■ 개선방안

○ 공증인의 직무교육 이수 의무를 신설함

- 임명공증인이 최초로 임명되었을 때 및 공증담당변호사로 최초로 신고 되었을 때 법무부

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함

- 직무교육을 통하여 공증인의 직무윤리, 공증사무 처리에 관한 전문지식 등을 교육할 수 있게 됨

○ 공증인 및 보조자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교육 이수를 의무화 함

- 공증인 · 공증담당변호사 및 공증보조자는 정기적으로 공증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공증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상시 구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 시간, 방법, 절차 등은 공증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정

2. 대한공증인협회의 강제단체화

■ 검토배경

- 공증협회가 임의가입 단체로 되어 있어 공증인 전체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공증인 전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기 곤란함

※ 현재의 대한공증협회는 1979년 설립되었고, 1998년 공증인법 개정시 비로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임의가입 단체로 규정

※ 현재 공증인 377명(대행청 제외) 중 368명 가입(97.6%)

- 법무부가 공증인에 대한 관리 · 감독권 행사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인원부족 ·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한계가 있어 공증협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개선방안

- 대한공증협회를 대한공증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명공증인 및 인가공증인의 가입을 의무화 함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변리사 · 세무사 · 관세사 · 법무사 등 거의 모든 전문직 단체는 강제단체로 규정

- 법무부장관의 공증인 감독권을 대한공증인협회에 일부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연수교육 실시권, 서류 통합보존시설의 설치 · 운영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

3. 징계제도 개선

■ 검토배경

- 공증인에 대한 징계제도 중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인가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

사간의 징계책임 등을 다른 개정 조항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할 필요 있음

■ 개선방안

- 징계사유를 확대하여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경우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도 징계사유에 포함시킴
- 과태료 금액(현행 100만원)을 현실에 맞게 1,000만원으로 상향함
- 공증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증인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함
- 징계회부 시효를 3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
 - ※ 현재는「공증인징계위원회규정」에서 징계시효를 2년으로 규정

IV. 새로운 공증제도 신설

1. 선서인증제도 도입

■ 검토배경

-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인증만으로는 증거력이 부족하므로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함으로써 유력한 참고인의 초기진술 확보 등의 증거화가 가능한 적절한 방식의 도입이 요청됨
- 선서인증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 외국의 관공서나 기업으로부터 선서인증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자주 있어 이에 대응하는 국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적 수요가 발생함
 - ※ 미국의 선서진술서(Affidavit), 독일의 서면상의 증인신문(schriftliche Zeugenvernehmung) 및 선서신문(eidliche Vernehmung), 일본의 선서인증서 등 입법례 다수

■ 개선방안

- 당사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사서증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경우 선서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함
- 증거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리촉탁을 금지하고, 선서 후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부과함
 - ※ 일본은 선서인증 시 허위진술에 대해 10만엔 이하의 과료(과태료)를 부과하고,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위증죄로 처벌함

2. 전자공증제도 도입

■ 검토배경

-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각계로부터 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상업등기법」제정에 따라 등기신청을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등기신청 서류에 첨부할 정관을 전자적으로 공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 개선방안

- 법무부장관이 전자공증을 수행할 공증인을 지정(지정공증인)하고,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일반 문서, 정관 등)에 대해 전자적 방식으로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전자문서에 당사자가 직접 전자서명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전자 정보로 만들어 원래의 전자문서에 전자적으로 첨부하는 방식
 - ※ 전자문서에 대한 선서인증도 가능
- 전자공증을 부여한 전자문서의 장기간 보존도 가능함
 - 전자문서의 존재, 공증 시점, 내용의 동일성 등 확인 기능을 수행하여 전자문서의 무결성 등을 입증
- 촉탁 및 공증의 절차·방식·수수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추후 전자공증시스템 개발, 설비 및 운용인력 등을 마련할 예정임

3. 번역인증제도 명시

■ 검토배경

- 번역문의 인증은 번역된 내용이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였음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통상적인 사서증서인증과는 성질을 달리함
- 또한, 국제적 교류가 빈번함에 따라 번역문에 대한 인증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음

■ 개선방안

- 공증인이 번역자의 서약을 전제로 번역인증을 부여하도록 함
 - 번역자로 하여금 번역문이 원문을 틀림없이 번역한 것임을 확인하고 서약서에 날인케 하며, 이를 근거로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

공증인 체계의 일원화 및 자격기준 강화

전 병 서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

I. 서론

사인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등을 명확히 하여 사건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장래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이른바 豫防司法(vorsorgende Rechtspflege)¹⁾의 기능 및 나아가 분쟁이 발생한 때에 용이한 권리실행과 신속한 분쟁해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공증제도가 활발한 경제활동과 법률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공증사무처리 현황(단위 건, 원)]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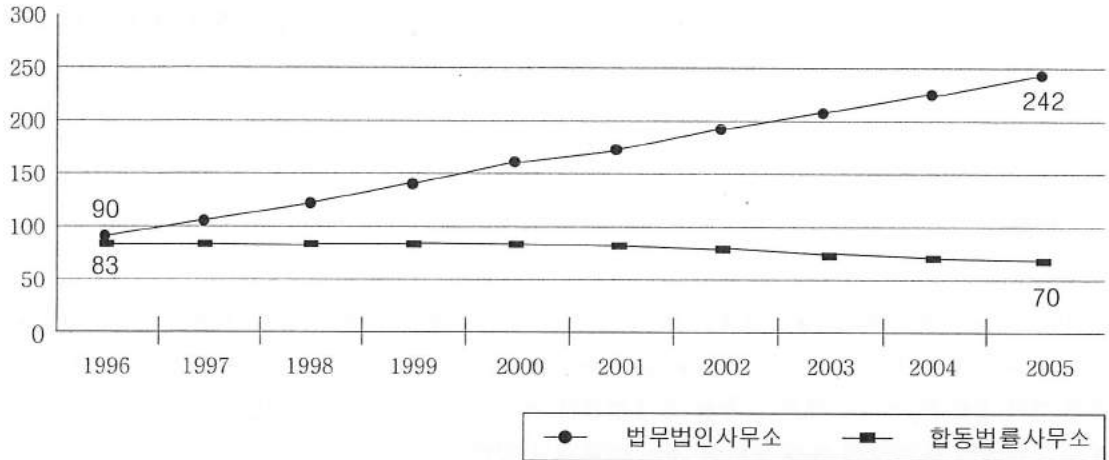
연 도 \ 구 분	사고처리건수	가 액
1996	3,372,502	27,719,548,241,721
1997	3,345,099	30,491,178,110,749
1998	3,117,019	27,395,370,333,638
1999	3,277,442	30,358,693,968,621
2000	2,440,208	38,416,829,511,505
2001	3,553,651	37,185,829,511,505
2002	3,988,234	46,623,278,453,465
2003	7,198,097	75,814,716,536,873
2004	3,637,051	70,206,071,853,069
2005	3,654,058	61,117,672,922,344

그런데 위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증제도에 관한 관련 법률을 보면, 공증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명에 의한 전업공증인(이하 임명공증인이라고도 한다)이 있는 이외에 변호사법에 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등(경과규정에 따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포함; 이하 변호사겸업공증인이라고도 한다)이 공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二元的 공증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³⁾.

[2007. 10. 31 현재 상황]

	임명공증인	공증대행청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	계
사무소 數(%)	30(7.7)	13(3.3)	67(17.2)	280(71.8)	390
근거법률	공증인법		변호사법		

[변호사겸업공증인 설립 추이] (단위 : 개소)



위와 같은 공증 관계법의 二元的 체계는, 양자 사이의 공증인의 자격이나 관리·감독에 서로 차이가 있는 등 법체계의 통일성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지 않으므로 이번 공증인법 개정에 있어서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으로 二元化되어 있는 공증 관련 법률을 공증인법으로 一元化하는 한편, 아울러 공증사무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증인의 자격 및 공증인가에 관한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⁴⁾.

II. 현행 二元的 공증인 체계

- 1) 예를 들어 독일 연방공증인법(Bundesnotarordnung) 제1조를 보면, 공증인은 豫防司法의 영역에서 독립한 공직의 담당자라는 표현이 나온다. BNotO §1 Als unabhängige Träger eines öffentlichen Amtes werden für die Beurkundung von Rechtsvorgängen und andere Aufgaben auf dem Gebiet der vorsorgenden Rechtspflege in den Ländern Notare bestellt.
- 2) 2006년도 법무연감 참조.
- 3) 한편,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 또는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검사 또는 지방법원등기소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데(공증인법 제8조), 이러한 공증사무의 대행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수료, 일당과 여비는 공증인의 수입으로 하지 않고, 國庫의 수입으로 한다(공증인법 제9조). 일본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만 일본은 검사가 아니라, 법무국, 지방법무국 내지는 그 지국에 근무하는 법무사무관이 관할구역 내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이 다르다(일본 공증인법 제8조).

1. 임명공증인

임명에 의한 전업공증인에 대하여는 공증인법이 이를 규율하고 있다. 여기서 단순히 공증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공증인법상의 임명공증인을 말한다.

(1) 임명권자

법무부장관은 해당 공증인이 소속하여야 할 지방검찰청을 지정하여 공증인을 임명한다(공증인법 제11조). 임명행위의 법적 성질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해석하는 입장과 피임명자인 공증인의 동의를 필수적 요건으로 임명권자가 행하는 일방적 행정행위라고 해석하는 입장으로 나뉘는데, 후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⁵⁾.

(2) 임명자격

공증인이 되기 위하여는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공증인법 제12조)⁶⁾.

일본에서는 공증인의 임명자격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판사, 검사, 변호사자격을 가지는 사람 가운데 공증인을 임명하는 이른바 法曹有資格者 공증인(일본 공증인법 제13조) 이외에도 위 법조자격자가 아니라도, 법률실무에 여러 해 동안 종사하여 위 법조유자격자에 준하는 학식경험을 가지는 사람을 (당분간 법무국, 지방법무국 또는 이들 지국의 관할구역 내에 공증인이 없든지, 있더라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증인 심사회의 선고를 거쳐 공증인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이른바 선고에 의한 特任公證人(일본 공증인법 제13조의 2)의 경우도 있다. 또한 적어도 규정이 사문화되어 있지만,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뒤, 공증실무수습을 마치면 공증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일본 공증인법 제12조 제1항), 우리는 이와 같은 별도 시험을 통한 공증인 자격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① 임기

처음에 공증인의 임기는 7년이고,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던 것을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32호에 의한 공증인법 개정으로 임기를 5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임명할 수 있게 하였다. 위와 같이 임기만료 뒤 1차에 한하여 재임명할 수 있도록 하

4) 이와 관련하여 2007년 7월 9일 「공증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인권과 정의(2007. 9), 7면 이하에 게재되어 있다.

5)李明宰, 우리나라의 공증제도 소고, 저스티스(1998. 6), 106면.

6) 종전에는 공증인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서 외국인은 공증인으로 임명될 수 없었으나,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90호에 의한 공증인법 개정에서, 국적요건이 외국과의 투자자유화협상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협상의 걸림돌이 되어 왔고, 변호사법도 외국인의 국내 변호사자격의 취득을 허용한 점을(변호사법 제5조 참조)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였다.

던 것을 그 뒤, 1994년 3월 24일 법률 제4745호에 의한 공증인법 개정으로 공증인을 계속하여 재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증사무의 전문성확보 및 연속성유지를 하고, 결원이 많은 공증인의 충원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현재는 공증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고, 다만 재임명할 때마다 그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공증인법 제15조 제1항).

임기만료 뒤, 재임명을 원하는 공증인은 공증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 1월 전에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공증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항). 위 재임명을 신청한 공증인은 그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재임명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공증인법 제35조).

② 면직

법무부장관은 ① 공증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② 공증인이 기간 내에 신원보증금 또는 그 보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③ 공증인이 신체 또는 정신의 쇠약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공증인을 면직시킬 수 있다(공증인법 제14조 제1항). 이 가운데 ④ 공증인이 신체 또는 정신의 쇠약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어 공증인을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공증인법 제14조 제2항).

③ 퇴직

공증인으로 임명된 뒤에도, 공증인이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의하여 제명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공증인법 제15조 제3항).

한편 1970년 12월 31일 법률 제2254호로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이 제정되어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 이외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도 그 구성원 변호사가 공증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증인의 정년제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1970년 12월 31일 법률 제2255호에 의한 공증인법 개정에서 공증인이 70세에 달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는 정년제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공증인의 연령이 70세에 달하여도 퇴직사유가 되지 않는다.

④ 임명기준

종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과 신원조회 회보를 참고하여 공증인을 임명하였다고 하

는데, 공증인에 대한 자격, 특히 연령 제한은 없는 셈이지만, 예를 들어 너무 고령의 경우에는 공증인에 대한 촉탁인의 신뢰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05년 「공증인임명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증인 임명자격을 법조경력 10년 이상 및 연령 상한 제한을 두었는데, 최근 이에 대한 불복소송이 있었다(자세히는 후술).

(3) 소속

공증인의 소속은 공증인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공증인법 제10조 제1항)⁷⁾. 소속의 지정은 통상 임명과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별개의 행위이다.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수는 관할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공증인의 정원은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정원 모두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종래 변호사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공증인이 합동법률사무소나 공증인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면 공증업무를 하면서 변호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훨씬 경제적 수입이 높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분석하였는데⁸⁾, 앞으로 이 점은 변호사 숫자 등 법조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4) 신분

공증인은 좁은 의미의 공무원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나, 넓은 의미의 공무원에는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증인은 국가로부터 보수는 받지 않지만,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실질적 의미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공증인이 집무집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풀이한다⁹⁾.

2. 공증인가 법무법인 등

(1)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① 입법적 연혁

1970년 12월 31일 법률 제2254호로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이하 단순히

7) 일본에서는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에 소속한다는 것이(일본 공증인법 제10조 제1항) 우리와 다른 점이다. 우리의 경우,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에서 공증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분장사무로 다루고 있지만, 일본의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과는 그 조직이 다르다. 일본은 등기, 호적, 국적, 공탁, 공증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무성의 지방실시기관으로 8개의 법무국 및 42개의 지방법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우리 법무실 법무과는 지방조직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일본과 같이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소속으로 하지 않고,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 듯하다.

8)李明宰, 위 논문, 106면.

9) 김상영, 한국공증제도에 관한 연구-공증의 예방사법적 역할을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학위논문(1995), 80면;李明宰, 위 논문, 110면.

줄여서 간특법이라고 한다)이 제정·공포되어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라는 새로운 제도가 창설되었다. 그리하여 변호사들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그 구성원인 변호사가 공증업무를 할 수 있는 이른바 변호사겸업공증인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1985년 9월 14일 법률 제3790호로 간특법에 규정되어 있던 법인의사록의 인증(간특법 제3조)과 이음·수표의 공증(간특법 제4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56조의 2로 흡수하였다. 그 뒤, 1993년 3월 10일 법률 제4544호로 변호사법이 개정되었는데, 간특법 제9조 이하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변호사법에 새로운 章(제5장의 2)을 만들고, 위 간특법을 폐지하여, 변호사법에 의한 일반법적 규정으로 흡수하였다.

그런데 1982년 변호사법 개정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제도가 신설되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인기가 시들고, 기존에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신설되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없는 형편이 되었다. 1994년 이후 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인가는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¹⁰⁾.

이후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07호로 변호사법이 전문 개정되어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6章에서 규율하였는데, 결국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57호 개정 변호사법은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제도를 폐지하면서, 다만 기존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는 존치시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칙 제6조에서 경과조치를 두었다.

② 설립

변호사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이하 합동법률사무소라고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종전 변호사법 제59조).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합동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할 것을 약정하고 규약을 작성하여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종전 변호사법 제60조).

합동법률사무소는 대법원 소재지에서는 5인 이상의 변호사로,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소재지에서는 3인 이상의 변호사로 각각 구성하며, 그 가운데 1인 이상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¹¹⁾ 사람이어야 한다(종전 변호사법 제61조).

③ 업무집행방법

공증에 관한 문서는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하고,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명한 구성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종전 변호사법 제62조 제1항).

10)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1995년 이후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설립신청은 1건도 없었다고 한다. 李明宰, 위 논문, 111면.

11) 판사·검사·변호사로 근무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

(2) 공증인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을 포함)

① 입법적 연혁

고도산업사회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무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변호사업무의 공동화, 전문화, 국제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594호로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법무법인제도를 신설하였다.

②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40조). 법무법인은 5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가운데 1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변호사법 제45조 12).

법무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변호사법 제42조). 그 밖에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서류 보관창고를 시설한 뒤에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¹³⁾.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는 구성원 중 통산하여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주사무소 구성원만이 수행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단서)¹⁴⁾.

③ 업무집행방법

법무법인은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한다(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본문).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변호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0조).

3. 임명공증인으로 一元化 문제

공증 관련 법률 체계의 一元化 문제에 앞서서 법무법인 등 변호사겸업공증인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공증인 제도를 임명공증인으로 一元化하는 문제가 종전에 검토된 적이 있었다. 즉 정부는 변호사법상의 법무법인의 공증사무취급에 관한 규정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12) 1982년 변호사법 개정 당시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변호사로 법무법인을 구성하도록 하였는데, 1993년 3월 10일 법률 제4544호로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법조경력에 관한 요건을 15년에서 10년으로 내렸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현재는 5인 이상 변호사 가운데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는 1인으로 충분하다.

13) 李明宰, 위 논문, 114면.

14)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57호 변호사법 개정 이전에는 공증업무를 행하는 구성원의 법조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개정법 시행 전에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로서 공증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위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다(부칙 제5조).

삭제하여 변호사겸업공증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증인제도를 一元化하려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2003년 12월 8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다(공증인제도의 정비 이외에 변호사법 인제도와 변호사조합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그 내용은, 기존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하여는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증권한을 인정하고, 2년 경과 후에는 공증업무만 담당하는 전담변호사를 둔 경우에 한하여 5년간 공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어 점차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공증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제도는 폐지함으로써 공증인법에 따른 임명에 의한 전업공증인제도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었다.¹⁵⁾

결국 이러한 내용은 1970년 이전의 공증제도 초창기처럼 임명공증인의 一元的 체제로 복귀하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제16대 국회 막바지에 개정안이 제대로 심의·의결되지 못한 채, 제16대 국회가 막을 내리게 됨에 따라 위 법안은 그대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후 제17대 국회가 개시되자(2004년 5월 30일부터 제17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정부는 곧바로 2004년 6월 3일, 위 제16대 국회에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였다(공증인제도의 정비 이외에 법무법인(유한)제도와 법무조합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찬반양론은 다음 도표와 같다.

그러나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기존 법무법인의 공증권한은 그대로 존치하되(나아가 새로 신설되는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에게도 공증권한을 부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제도는 폐지하고(다만, 기존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는 존치시켜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

[찬반양론]

구분	일원화 근거	변협·공증협회의 반론
성질	공증사무의 국가사무적 특성상 송무와 병행하는 것은 부적절	공증사무나 송무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어 겸업하더라도 무방
관리	관리변호사겸업공증인은성질상 공증업무를 소홀히 할 소지	공증업무 소홀은 법무부 관리·감독으로 개선 가능국민
국민 불편	없음 - 경과기간(7년) 동안 필요한 공증인 임명 가능 - 공증수수료는 현행 수준 유지	있음 - 전국 281개 겸업공증인의 폐지로 국민의 불편 초래 - 공증수수료 인상 우려법적
법적 안정	전업공증인으로 전환시 시설 및 인력 활용 가능	- 기존 사무소 등 공증시설 유향화 - 고령변호사, 보조인력 실직사태
기타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폐해 축소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의노후 보장책으로 악용 소지

15) 자세한 내용은 석동현, 공증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지정토론문, 인권과 정의(2003. 12), 16면 이하 참조.

을 둠), 공증업무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주사무소 구성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이러한 개정 변호사법이 200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2005년 1월 27일 공포되었다¹⁶⁾.

그런데 이번 검토에 있어서 공증인 자체를 임명공증인으로 一元化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법무법인 등이 공증사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변호사겸업공증인제도를 폐지하고 임명공증인으로 一元化하는 것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무리이므로 향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한편 법무법인 등의 난립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로는 공증인가를 엄격히 하고, 감독강화, 교육의무 부과 등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III. 검토 과제

1. 공증 관련 법률 체계의 일원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공증인 제도 자체 및 그 근거 법률이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으로 분리되어 二元的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二元的으로 규율되고 있는 것은 그 체계에 있어서 혼돈을 가져온다¹⁷⁾. 또한 근거 법률이 상황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해 제정·개정되었기 때문에 공증인의 자격이나 관리·감독에 서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임명공증인은 임명제로,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재임명의 권한·정원수 조정권¹⁸⁾ 등이 부여되어 있다. 한편 법무법인 등은 인가제이고(법무법인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자격 부여됨), 자격 등 주요사항은 변호사법에서 규율하면서, 징계 등은 공증인법을 준용하여 그 자체 二元的으로 관리되고,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겸업공증인에 대한 정원수 조정권,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한 임명, 재임명의 권한 등이 없다.

결론적으로 공증인 제도 자체는 임명공증인과 법무법인 등으로 二元的으로 유지하더라도, 공증 관련 법률 체계는 공증인법으로 一元化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전업공증인

1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 <http://search.assembly.go.kr/bill> 참조.

17) 개인 임명공증인제는 공증인법에, 합동법률사무소와 공증법인은 변호사법에 각 규정되어 있는 등 법체제상의 난조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으로 李時潤, 공증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법률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인 <http://www.lawtimes.co.kr>(1999. 12. 4. 입력) 참조. 또한 공증인법의 명칭을 「공증인법」 대신에 「공증법」이라고 개정하는 동시에 「공증법」에 공증담당자의 종류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각 조문의 「공증인」이라는 표현을 「공증담당자」로 표현하는 것이 이른바 변호사겸업공증인제도가 주류인 현재의 실정에 걸맞고, 나아가 공증인법을 손쉽게 현재의 실정에 걸맞게 개정하기 위하여는 공증인법의 명칭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공증인법에 공증담당자의 장을 신설하고 공증담당자의 종류를 명시하는 동시에 공증인법의 공증인도 공증담당자의 일종으로 명시하며, 공증인법의 각 조문 중 공증인이라는 표시를 공증담당자로 바꾸어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는 의견으로는 윤종섭, 공증관계법 개정에 관한 의견, 법률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인 <http://www.lawtimes.co.kr>(2001년 1월 6일 입력) 참조.

(Nurnotar) 이외에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공증인 업무를 하는 변호사겸업공증인(Anwaltsnotar)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가 우리와 비슷한 독일도 공증인제도의 기본법으로, 1961년에 제정된 연방공증인법(Bundesnotarordnung)이 전업공증인과 변호사겸업공증인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리하여 변호사법을 공증인법으로 흡수하여 법률 체계를一元化하면서, 공증인법 개정(안)에서는, 공증인을 임명공증인(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공증인; 종전 공증인법상의 임명에 의한 전업공증인에 해당)과 인가공증인(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으로 경과규정에 따라 현재 존속 중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포함)¹⁹⁾ 공증인을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나아가 모든 공증인에 대하여 자격, 정년, 권리·의무, 공증사무의 처리방법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였다.

[신규대비]

	현 행	개 정 안
근거법률	공증인법, 변호사법	공증인법
공증인	공증인, 공증대행청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	임명공증인, 공증대행청 인가공증인

2. 공증인의 임명기준 강화

1970년 공증인법 개정에서 공증인이 70세에 달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는 정년제를 삭제하였고, 현재는 공증인의 연령이 70세에 달하여도 퇴직사유가 되지 않는다. 공증인법상으로는 공증인에 대한 임명 또는 재임명의 연령 제한은 없는 셈이다.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연령별 분포 (2006. 6. 기준)]

연령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합계
인원(명)	2	15	17	65	107	172	2	380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 법무부가 「공증인 임명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증인 임명자격을 법조경력 10년 이상 및 연령 상한 제한을 두었는데, 공증인 임명 연령을 65세 미만(재임명은 70세 미만)으로 연령 상한 제한을 둔 것에 대하여, 최근 불복소송이 있었다. 판결은 “임명자격을 연령에 의해 제한하거나 정년제도 등을 둘 경우 연령에 따른 차별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

18)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수는 관할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공증인의 정원은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에관한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19) 종래 변호사법상의 법무법인 등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으면 법무법인 등이 당연히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었으나, 개정 공증인법(안)에서는 인가공증인이 되기 위해서 공증인가를 별도로 받도록 하였다.

거나 평등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한 입법정책적인 검토와 제도적 보장 등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2005년 11월29일 자로 마련된 공증인임명기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공증인 임명 및 자격유지와 관련된 연령 상한 제한은 설사 그 제한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해도 입법에 의할 것을 행정청 내부 지침으로 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서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2006. 9. 13. 공증인임명거부처분취소소송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하지만, 예를 들어 공증인이 너무 고령인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공증인에 대한 촉탁인의 신뢰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그리하여 공증사무의 적정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임명자격을 연령에 의해 제한하거나 정년제도 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였다.

▷ 외국의 경우의 공증인의 연령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일 본 : 70세를 면직사유로 규정
- ② 독 일 : 최초 지원시 만 60세에 이른 때에는 공증인으로 임명될 수 없고, 정년은 70세
- ③ 대 만 : 만 70세인 자는 민간공증인으로 선임될 수 없음
- ④ 중 국 : 만 25세 이상 만 65세 이하

▷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성은 74.4세이고, 여성은 81.8세이다.

▷ 현재 임명공증인의 평균연령은 63.0세이고, 75세 이상은 5명(16.7%)이다²⁰⁾.

공증사무의 난이도, 외국의 입법례, 한국인의 평균연령 등 여러 가지 고려에 기하여 공증인법 개정(안)에서는 정년을 75세로 규정하고, 다만, 정년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을 3년 유예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년 문제뿐만 아니라, 공증사무의 적정성과 신뢰성의 확보라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임명자격 기준을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서²¹⁾ 통산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사람으로 한정·강화하였다. 독일에서 변호사는 시험을 합격하여 등록하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지만, 공증인이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예를 들어 전업공증인이 되려는 경우는 공증인시보(Notarassessor)로 적어도 3년의 경력을 거친 뒤, 성적주의에 따라 임용되고, 변호사겸업공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저 5년간의 변호사 경험이 필요하고, 나아가 시험성적 등 일정한 기준에 따른 합격점에 도달하여야 하는 득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공증인의 임명자격에 있어서 판사, 검사, 변호사자격을 가지는 사람 가운데 공증인을 임명하는 이른바 法曹有資格者 공증인은 법관이나 검사로 30년 이상 실무경험을 가진 有資格者が 임명되는 것이 원칙이다.

20) 전문한 바로는, 독일 헤센주에서 임명되는 공증인의 평균연령은 47세이고, 전업공증인의 경우에는 변호사공증인 경우보다 젊어서 공증인의 평균연령은 38세 정도라고 한다.

21) 판사·검사·변호사로 근무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증인법 개정(안)에서는 재임명할 때마다 그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삭제하였다. 즉, 재임명시의 임기를 신규 임명시와 동일하게 5년으로 통일하였다.

[신규대비]

	현 행	개 정 안
임명자격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자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임기·재임명	신규임명시 5년, 재임명시 3년	5년으로 통일
정 년	없음	75세

3. 법무법인 등에 대한 공증인가의 필요 및 자격기준의 강화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설립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은 별다른 제한 없이 공증사무 취급 권한이 부여되는데, 한편 공증사무소의 난립과 과당경쟁, 그리고 담당 변호사가 무단으로 사무소에서 이탈하는 등 부적정한 직무집행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공증인법 개정(안)에서는 법무법인 등의 설립인가와는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5년 단위로 재인가할 수 있도록 공증인가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 즉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강화하였다.

또한 관련 법률 체계의 一元化에 수반하여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면서(경과규정을 둠), 정년을 75세까지 제한함으로써(정년은 시행일을 3년 유예) 임명공증인과 동일하게 자격을 규정하였다²²⁾.

[신규대비]

	현 행	개 정 안
공증취급 권한	법무법인 등에 자동 부여	공증인가 취득 필요
인가 유효기간	없음	5년(연장허가 가능)
공증담당변호사	- 법조경력 5년 - 인원수 요건 없음	- 법조경력 10년 - 75세 미만 - 2명이상

22) 종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나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오히려 고령의 변호사에 대한 품위유지와 노후복지를 감안한 것이고, 나이가 여러 명의 변호사가 공증업무를 하기 때문에 구성원 가운데 1명이 건강이 좋지 않아도 그 사무실의 공증업무는 별 지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 실제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심히 곤란한 정도의 건강상태에서도 그 구성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인다.

공증인 체계의 일원화 및 자격기준 강화

윤 정 석

대한공증협회 총무이사

1. 공증관련 규정을 공증인법으로 일원화하여 보완한 것은 타당한 조치임

개정 공증인법은 이전의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에 산재하여 있던 공증관련 규정을 일원화 하여 공증인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을 정비하였는데 이는 발전적인 조치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로써 공증인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통일시키고 법무법인 등 인가공증인의 직무집행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의 통일성을 보장하였다.

2. 공증인 종류의 일원화가 필요한가?

공증인의 종류는 여전히 2원화를 유지하여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을 인정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증인"이라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다.

공증인제도는 연혁상 개인 공증인의 임명에서 출발하였으나, 사회의 발전에 따른 법률문화의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에 따라 오히려 개인 공증인이 법문화의 수요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나 전문성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법도 종래의 임명공증인 제도에서 나아가 추가적으로 법무법인에게도 인가를 통하여 공증인의 업무를 취급토록 하는 '인가공증인'을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2003. 12. 인가공증인제도를 폐지하고 종래의 일원화된 임명공증인 제도로 회귀하려는 변호사법개정안이 제출되었던 것은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당시 논의된 찬반양론의 근거가 모두 일리는 있으나, 근본적인 논의의 초점은 국가사무의 일부를 사인이 처리하는 공증업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업무수행의 과정을 엄격히 관리, 감독하여 공증업무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번의 개정법안에서도 우선 임명공증인이나 혹은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전업공증인'으로 공증이외의 변호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증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냐하는 문제를 논의해 볼 여지는 있다.

(1) 전업공증인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인의 종류가 '임명공증인'이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이던 공증업무에만 전념하도록 규제하면 공증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업공증인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시행하려면 공증인 전업공증업무만으로 생계보장이 될 수 있는 시장여건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공증인의 수를 인위적으로 규제하지 아니할 수 없고 공증인의 수가 제한되면 일반국민으로서는 공증인의 수가 많을 때 보다 공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제약받게 될 것이다.

이미 인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인가공증인의 수가 상당한 정도에 있고, 법무법인의 공증사무실이 법인의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함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다시 전업공증인제도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그 같은 필요성을 뒷받침할 논거도 부족하여 보인다.

다만 향후 새로운 공증인의 임명과 인가시에 공증업무의 시장은 무제한적인 자유경쟁의 논리를 제한하여야 하는 공공업무의 측면이 강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양과 질을 적절히 고려한 수준에서 그 수를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공증인의 자격은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중 보다 강화된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들에게 변호사업무를 전폐하고서도 공증인으로 활동하기를 원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보수가 보장되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전업공증인제도는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공증인들은 자신들의 업무부하정도와 능력, 여력을 고려하여 공증업무도 충실히 수행하고 여력이 있으면 변호사업무도 병행하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다. 다만, 공증업무를 정하여진 규칙을 준수하여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감시, 감독 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2) 공증인 종류의 일원화

현재로서는 공증인의 이원화가 유지되고 있으나, 법률시장의 변화추세를 감안할 때 대도시에서는 빠른 속도로 '임명공증인'의 활동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공증업무도 대부분 변호사업무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전문화, 세분화된 지식에 근거한 검토를 요하는 것이 점차 늘어나는 현실에 비추어 모든 법률서비스가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상호 경쟁력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공증업무의 영역이 늘어나면 이러한 서비스의 차이는 더

육 현저하여 질 것이다.

물론 공증업무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주변도시나 지방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편의향상을 위한 공증업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므로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이원적인 공증인 제도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을 일원화의 필요성이나 논거를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3. 자격기준 강화

개정법은 공증인 임명자격을 통산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쌓은 자로 한정하고, 공증인 정년을 75세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인가공증인은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고,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자로 나이를 75세까지로 제한함으로써 임명직 공증인과 통일적으로 자격기준을 정하였다.

아울러 의무적으로 공증인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증인으로서의 자질유지 의무를 강화하였다.

평균수명의 연장추세와 관련하여 정년이 너무 짧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이같은 자격기준 강화는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생각된다.

선진공증제도의 도입¹⁾

— 선서인증 및 전자공증을 중심으로 —

남 상 우

공증인 • 변호사

1. 서론

공증제도란 사인의 법률관계와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작성, 인증 기타 방법으로 그것을 증명함으로써 법률관계와 사실을 명확히 하고 문서의 증거력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사적 법률생활의 안정과 예방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나 공증제도를 규율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공증인법을 갖지 못하고 헌법²⁾에 의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조선공증령과 일본공증인법이 그대로 시행되다가 1961년 9월 23일에야 비로소 우리의 공증인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종전에 공증사무를 감독하는 관청이 사법부에 속한 법원이었던 것에서 행정부에 속한 법무부로 바뀐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종전과 대동소이한 편이었다. 그 뒤 거의 반세기에 이르도록 15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제9차 개정(1985. 9. 14. 법률 제3790호로 개정된 법률)에서 어음·수표의 공증제도와 법인의사록의 인증제도를 도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한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³⁾.

언필칭 공증은 예방사법의 꽃이라고 한다. 지역간 국가간 이동이 거의 없는 전통사회에서는 사인간의 거래에 관하여 증거의 증명력을 확보함에는 공정증서의 작성이나 사서증서의 인증의 방식만으로도 충분하였다.

1) 이 내용은 2007. 12. 14. 법무부가 주최한 공증인법 개정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2) 제헌헌법 부칙 100조에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3) 다만 9차 개정입법으로 공증인법에 새로 도입된 어음·수표의 공증제도와 법인의사록의 인증제도는 1970년 12월 31일 제정된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별법에 규정한 바를 동법의 폐지로 공증인법에서 수용한 것이다. 직무에 관한 사항 외에 큰 변화로는 간이절차특별법에 의하여 합동법률사무소에,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에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러나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사회로 진화해 감에 따라 지역간 이동이나 국가간 이동이 빈번하고 사회가 복잡다기해지면서 사인간의 거래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종래의 공정증서작성이나 사서증서의 인증보다 증명력이 더욱 더 강화된 공증수요가 대두되었다. 그것은 특히 일찍부터 선서인증제도가 발달한 영미 등 선진외국과의 거래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한편 과학기술문명이 발달하여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사인 간의 거래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거래가 급격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공증은 종이문서를 대상으로 인증을 하거나 종이문서상에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이 종이문서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자거래에 있어서 전통적인 공증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거래에서는 공증 본래의 기능이 갖는 역할이 필요 없게 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그 대상만이 바뀌었을 뿐 여전히 전자거래에서도 공증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일본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에서는 이미 종이문서에 대한 인증에 대응한 새로운 형식의 공증이 시행되고 있으니 이것이 곧 전자공증제도이다.

2007년 1월에 법무부에 설치된 공증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공증이 예방사법의 꽃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증인법에 선서인증제도와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공증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하에서는 당시 위 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논의를 중심으로 선서인증과 전자공증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선서인증

(1) 선서인증의 개념

선서인증이란 사서증서를 인증할 때 증서작성자로 하여금 공증인⁴⁾의 면전에서 직접 사서증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제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게 한 다음 이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촉탁인이 사서증서에 허위내용이 있음을 알고 선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인증이다.

종래의 사서증서의 인증은 그 인증을 통하여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성립을 증명할 뿐 그 증서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까지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선서인증은 허위선서에 대한 제재를 담보로 하므로 그 진술서에 포함된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보증된다.

영미에서는 일찍부터 선서진술서(Affidavit) 제도가 널리 이용되어 왔고, 독일에서는 이와 유사

4) 현행법에 따르면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증인법에 의한 임명공증인,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담당변호사, 공증업무대행검사 등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이들을 모두 통칭하여 공증인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한 선서신문제도(eidliche Vernehmung)가 시행되고 있다. 일본과 대만에서도 선서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⁵⁾.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한 우리와 법제가 거의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1996년에 도입하였는데 그 도입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매우 격렬하게 대립되었다고 한다. 선서인증의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가 내세우는 이유로는 ① 분쟁발생의 예방수단으로서 분쟁발생전의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알거나 명확히 할 수 있는 자의 진술을 모아두는 것은 무익한 분쟁의 발생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한다, ② 법원에 의한 증거보전은 급박한 경우에서도 신청, 증인소환, 출석 사이에 얼마간의 시간을 요하나 그러한 시간이나 번거로움 없이 간이한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선서인증된 진술서의 진술자가 후에 증인으로 법정에서 식언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④ 증인이 사망하거나 증인이 원격지 혹은 국외에 있거나 증인이 연령, 질병, 허약 혹은 수감 중이기 때문에 출석 또는 증언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등의 이유가 제시되었다⁶⁾.

이에 대하여 도입에 반대하는 견해의 주된 이유로는 ① 선서나 위증죄의 제제에 의해 증언의 진실성의 담보를 기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다, ②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은 공증인 면전 조서에 높은 증명력을 인정하는 것은 진실발견과 공정·적절한 심증형성에 있어서 부적당한 수가 많다, ③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제도를 창설할 필요성이 없는데다가 법정에서 다른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증언을 방해하고 진실한 증언을 할 기회를 잃게 하는 것으로 되기 쉽다, ④ 종래대로 진술서를 서증으로서 제출하면 족하다, ⑤ 이와 같은 서면에 증언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가지게 하면 서면주의로 빠지게 되고 재판의 형해화를 초래하는데다가 재판의 공개의 원칙에 반한다 등의 이유가 제시되었다⁷⁾.

(2) 선서인증의 유용성

선서인증의 도입에 관한 찬반대립은 선서인증된 진술서가 반대신문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강력한 증명력을 갖는 증거방법이라는 점에서 주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사용될 때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선서인증이 도입될 경우 공시송달사건이나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진단서의 진정성립을 위하여 그 작성자인 의사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는 경우 등 민사소송절차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선서인증은 민사소송절차에서 보다는 다음과 같은 절차나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① 보전처분에서의 소명자료

5) 외국의 선서인증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상영, “선서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2006 참조.

6) 앞의 글 19면, 20면.

7) 앞의 글 21면, 22면.

민사보전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자료로는 보통 신청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나 심지어 신청인 자신의 진술서를 제출되기도 한다. 이 경우 신청인 자신의 진술서로는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선서인증된 진술서는 단순한 진술서에 비하여 증명력이 강화된 것이므로 소명된 것으로 인정받기가 쉬울 것이다. 또한 관계인의 진술서라고 하여도 선서인증된 진술서인 경우에는 소명정도가 강화되어 소명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담보액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간이한 증거보전수단

민사소송절차에서 증거보전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사유 즉,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보전은 법원을 통하여야만 할 수 있고 절차도 까다롭다. 그러나 선서인증은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폭넓게 인정된다. 또한 절차도 법원의 증거보전절차에 비하여 매우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따라서 선서인증은 장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비하여 간이한 증거보전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③ 행정기관 등에 대한 소명자료

행정기관에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거나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 신청이유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많다. 이 때 선서인증을 받은 진술서를 제출한다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소명정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행정심판절차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청구인으로서 소명자료가 다소 부족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유로 개인이 기업이나 기타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일정한 사항 즉 자신의 이력이나 경력 등에 관하여 소명을 해야 할 경우에 선서인증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④ 외국의 관청이나 기업에 제출하는 진술서 등

그 동안 우리나라 공증인법에 선서인증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선서인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서인증제도를 시행 중인 외국의 기관이나 학교, 기업체, 단체 등에서 선서인증서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 경우 지금까지 편법으로 선서인증문구가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그 진술서에 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수밖에 없었다. 선서인증이 도입되면 이와 같이 외국의 관청이나 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 선서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외국에서도 우리의 인증서에 대하여 그만큼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선서인증의 방식

선서인증도 기본적으로는 사서증서의 인증의 한 유형이므로 촉탁인의 확인, 인증부 작성, 부속 서류에 관한 사항 등은 사서증서의 인증의 경우가 그대로 준용될 것이다. 그러나 허위내용이 있으면 제제한다는 제재의 고지나 선서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그 방식이 사서증서의 인증과 크게

다르다. 선서인증방식에서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진실하다는 선서

선서인증은 사서증서의 내용이 진실하고 만일 허위내용이 있으면 처벌(제재)을 받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함이 그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선서라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대리와 친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선서는 스스로 직접 하여야 선서의 취지가 확실하게 선서자에게 전달되고 그래야만 내용의 진실함이 보증될 것이고 만일 선서를 대리로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서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서인증은 대리촉탁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② 허위선서에 대한 제재의 고지

선서에 앞서 허위내용임을 알면서 선서한 경우 구체적으로 선서자가 어떠한 제재를 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촉탁인에게 고지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허위내용임을 알면서 선서한 경우에 처벌(제재)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촉탁인이 허위선서를 하였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③ 제재규정

선서인증된 진술서가 단순한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은 진술서와 비교하여 증명력이 강화되는 것은 허위선서를 하였을 때 처벌(제재)받는다는 사실 때문이므로 허위선서를 하였을 때 일정한 처벌(제재)을 받는다는 처벌(제재)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제재)을 하여야 할 지가 문제이다.

과태료로 정할 것인가, 벌금형으로 정할 것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택형으로 정할 것인가? 과태료나 벌금형으로 정할 경우 그 상한액은 얼마로 할 것인가 징역형과 벌금의 선택형으로 정할 경우 징역형의 최장기를 얼마로 정하고 벌금의 상한액은 얼마로 정할 것인가? 공증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도 선서인증제도의 도입에 대하여는 쉽게 의견일치를 보았지만 처벌(제재)수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선서인증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징역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국민들의 위증에 관한 법의식에 비추어 선서인증의 경우는 쉽게 허위내용이 포함된 사서증서에 관하여 쉽게 선서인증에 응할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본의 아니게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입법례로는 일본의 경우 우리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과료10만엔 이하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만의 경우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 3만원(대만화폐)이하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⁸⁾. 개정안은 따르면 과태료와 징역형 사이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④ 원본보존

선서인증도 사서증서의 인증의 일종에 해당한다. 사서증서의 인증의 경우 인증을 부여한 진술서는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공증사무소에서는 더 이상 이에 관하여 보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서

인증은 선서한 자가 허위내용임을 알고서 선서한 경우 처벌함을 전제로 한 인증이다. 따라서 후에 선서 당시 인증한 진술서 내용에 관하여 이를 훼손하거나 변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이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인증된 진술서의 경우보다 그 등본을 발급할 필요성도 많다. 그렇다면 선서인증한 원본을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 소위 원시정관의 인증의 경우에서와 같이 선서인증의 경우에도 원본을 2부 작성할 필요가 있다.

3. 전자공증

(1) 전자공증제도의 필요성

공증제도란 말할 것도 없이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나아가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이다. 종래의 공증은 공정증서의 작성이나 인증의 부여는 물론 기타 공증인의 사무로 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종이문서를 작성하거나 종이문서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바야흐로 20세기 후반 등장한 개인용 컴퓨터의 발달과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는 삽시간에 세계적인 규모로 정보의 교신이 가능하게 되고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를 대체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종이문서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인증에 대응하여 전자문서에 대하여도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구나 2007. 8. 3. 상업등기법이 제정되면서 2008. 4. 1.부터는 전자문서에 의한 등기신청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등기신청시 종이문서형태의 정관이나 의사록 대신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이나 법인의사록을 첨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상업등기법이 제대로 시행되게 하기 위하여서라도 정관이나 의사록의 인증이 전자거래에서도 활용되는 길이 공증인법에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2) 전자공증의 개념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전자거래라고 하고,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⁹⁾.

8) 형법은 위증죄에 관하여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정의).

전자서명이라 함은 당해 전자문서에 전자문서의 작성자임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¹⁰⁾. 다시 말하여 종이문서인 사서증서에 작성자가 작성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을 하듯이 전자문서에도 작성자가 작성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첨부하거나 결합시키는바 이때 첨부하거나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서명이라고 한다.

종이문서인 사서증서에 작성자가 존재하듯이 전자문서에도 작성자가 존재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종이문서인 사서증서에 대하여 그 성립에 관하여 인증을 부여하거나 사서증서의 원본에 관한 등본인증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부여하듯이 전자문서에 대하여 그 성립에 관하여 인증을 부여하거나 전자문서의 원본에 의한 등본임을 인증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을 전자적 형태로 하는 것을 당연히 상정할 수 있다.

전자공증이란 종이문서인 사서증서에 대한 공증에 대응하여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적 형태의 공증을 말한다. 따라서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사인이 작성자를 나타내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하거나 결합시킨 전자적 형태의 정보 즉 전자서명에 관하여 그 진정성립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전자적 형태로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서증서의 인증에서 소위 선서인증을 수행하듯이 전자문서에 대하여도 선서인증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인이 작성한 전자문서의 원본과 그 내용이 동일함을 공증인이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인증하여 주는 것을 전자문서의 등본인증이라고 말할 수 있고¹¹⁾, 사인이 작성한 전자문서에 대하여 확정일자의 부여는 전자적 형태로 일자정보를 부여하여 그 전자문서가 일정시점에 존재함을 증명하여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¹²⁾.

(3) 전자공증의 필요성

전자거래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 정보가 송·수신되기 때문에 정보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나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정보의 내용이 소실, 변개될 염려가 늘 상존하기 때문에 그 소실, 변개 등에 대비하거나 또는 소실, 변개 등이 있었을 경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자문서에 대하여 기존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나 공인인증서명만으로는 전송 도중에 발생하는 정보의 소실 등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다¹³⁾. 전자거래에

10)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11) 법무부 공증인법개정안에서는 사서증서의 등본인증에 정확히 대응되는 전자문서의 등본인증개념은 두지 않고 있다. 그 대신 개정안 제66조의5조에 의하면 촉탁인은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와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의 보관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증인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동일하다는 증명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 나아가 공증인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와 동일한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12) 다만 전자서명법 제20조 이미 전자문서의 시점확인제도가 있는바, 이는 공인전자서명이 이루어진 전자문서에 한하여 확정일자부여의 효과가 있다.

있어서는 이런 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 하여금 정보 내용의 소실이나 변개에 대비하고, 정보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며, 증명하여 주는 역할이 더욱 더 절실하다.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래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사서증서로 하는 경우보다도 오히려 공증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이문서인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이 단지 사서증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관하여 성립의 인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이 전자공증도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의 성립의 인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종이문서인 사서증서로서의 정관이나 법인의 의사록에 대한 인증을 부여할 때에 그 내용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심사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비로소 인증을 부여할 수 있듯이 전자문서로 된 정관이나 법인의 의사록에 대한 인증의 경우도 그 내용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종이문서로 된 사서증서가 법률행위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인증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듯이 전자문서가 법률행위에 관한 것일 때에도 역시 그 내용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인증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이문서로 된 사서증서가 법률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제3자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나 허락 없이는 인증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듯이 전자문서가 법률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제3자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나 허락 없이는 인증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더 나아가 공증의 역할이 예방사법에 있는 것이니만큼 인증하려는 사서증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무효로 될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캐어 물어 명확히 하고 인증을 부여하듯이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무효로 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하고 인증을 부여하여야 한다.

결국 종이문서인 사서증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과 별도로 인증이 필요하듯이 사인이 작성한 전자문서에 대하여도 전자문서에 공인인증서명을 첨부하는 제도가 있는 것과 별도로 공증인이 이에 대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전자공증의 방식

종이문서인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을 부여함에 있어서 소위 면전인증과 자인인증이 있듯이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도 면전인증과 자인인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종이문서인 사서증서에 대한

13) 법률적인 관점에서 전자서명은 사서증서에 도장을 날인하는 의미와 유사하고, 공인인증서명은 사서증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의미와 유사하며, 전자공증은 사서증서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인증이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이든 작성자임을 인증하는 것이므로 촉탁인(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확인만큼은 종이문서에 대한 인증과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공증인이 대면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종이문서인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과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그 대상의 존재양식의 차이로 인하여 인증의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종이문서인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이 종이 상에 공증인이 일정한 사실¹⁴⁾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를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에 비하여,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전자문서에 공증인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사실을 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¹⁵⁾를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고, 일정한 방식의 전자서명¹⁶⁾을 하는 방법에 의한다¹⁷⁾.

이와 관련하여 종이문서에 대하여는 그 사서증서에 삽입, 삭제, 번개, 난외기재 기타 정정이 있거나 파손 기타 외견상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 비하여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없다. 전자문서는 애초에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포함한 전자공증은 전자공증이 있는 다음에는 원칙적으로는 전자문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포함) 및 공증인이 작성한 인증한 취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증인의 전자서명 포함)이 기술적으로 쉽게 번개가 이루어질 수 없고 번개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번개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한다. 만일 이러한 기술이 성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애초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포함한 전자공증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의 수행에 관한 규정에는 전자서명이나 정보에 대하여 번개가 이루어질 수 없고 번개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기술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종이문서인 사서증서에 대한 공증에 따른 장부 또는 서류의 보존이나 직인의 보관 등 공증업무일체가 공증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공증사무소에 보관 또는 보존함에 비하여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등은 그 기술적인 사정으로 개별 공증사무소에서 이를 수행할 수도 없고 수행하기도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시스템을 갖춘 기관 즉 전자공증관리센터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개별 공증사무소는 단지 그 센터와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네트워크상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¹⁸⁾. 따

14) 공증인법 57조에 의하면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한다」.

15) 종이문서 상에 기재하는 문자에 해당.

16) 종이문서 상에 날인 또는 서명에 해당.

17) 구체적인 공증진행절차는 별첨 자료 2를 참조바람(일본의 전자공증진행절차에서).

라서 전자공증제도가 도입되는 초기에는 이러한 장비나 시스템을 갖춘 공증인에 한하여 전자공증을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4. 결어

선서인증이 소송절차에서 반대신문권 보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나 이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이 그 운용의 묘를 잘 살린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점은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더구나 소송절차 보다는 오히려 소송외의 절차나 분야에서 그 역할이 기대된다. 따라서 이를 도입함이 타당하고 본다.

한편 전자공증은 국민들의 법률생활에서 이미 전자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그 법률생활 중에는 공증이 필수적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이 늦어지는 경우 본의 아니게 국민들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선서인증과 전자공증을 도입함에 관하여 필자는 공증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는 이를 적극 찬동한다. 다만 법무부가 마련한 공증인법 개정안에 대하여 사건으로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선서인증제도에 대한 개정(신설)법률안에 관한 사건

첫째, 선서무능력자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322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무능력자로 규정하여 선서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선서인증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허위선서에 대하여 형벌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둘째, 인증방법으로는 자인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면전인증만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선서인증은 본질상 대리촉탁이 금지 되고 있어 촉탁인 본인이 어차피 공증사무소에 와서 직접 공증촉탁을 하여야 하므로 진술서에 자신의 성명을 자서하는 것이 그다지 번거로운 일도 아니므로 자인인증을 인정할 실익이 크지 않고 선서내용을 좀 더 명확히 인식시킨다는 차원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촉탁인으로 하여금 진술서에 직접 서명날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자인인증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면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이 공증촉탁을 할 때 참여인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인의 제한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에 대하여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셋째, 공증인이 촉탁인에게 허위내용이 있음을 알고서 선서한 경우에 처벌(제재)을 받는다는 사실 및 처벌(제재)의 내용을 직접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직접 법률에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18) 공증인법 개정안 제66조의7.

19) 공증인법 개정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지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지정공증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자인증이 새로 도입된 것이므로 허위내용이 있음을 알고도 전자인증을 한 경우에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촉탁인에게 강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전자공증에 관한 공증인법개정(신설)안에 대한 사건

첫째, 인증은 사인이 작성한 사서증서를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의 경우에도 당연히 사인이 작성한 전자문서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이런 점이 명시되지 않아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둘째, 전자문서의 인증 등에 관하여는 대리·점무에 관한 6장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기왕에 한 전자공증에 관하여 지정공증인이 사망하는 등으로 공증사무소가 폐쇄되는 경우 그 지정공증인이 취급한 전자공증에 관하여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촉탁인의 신원확인 등에 따른 부속서류 또는 장부 등 서류인수는 누가 하는지, 그 지정공증인이 취급한 전자공증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청구는 어떻게 또는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개정(신설)법률안에서는 이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공증이 도입되게 되면 당연히 정관에 대하여도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의 방식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인바 종이문서인 정관에 대하여 인증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63조는 종이문서인 정관에만 해당하므로 전자문서로 된 정관의 경우는 제외하여야 타당하다. 또한 전자문서로 된 정관의 인증에 관하여는 종이문서로서 인증의 경우 원본 2부를 인증하여 1부는 공증인이 보관하고 1부는 촉탁인에게 교부하듯이 전자문서로 된 정관의 인증의 경우에도 후에 정관내용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인증한 전자문서 정보를 공증인이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일본의 경우 전자공증이 시행된 지 7년이 경과한 현재 정관에 대한 전자공증이 거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정관에 대하여 전자공증을 받을 경우에는 종이문서로 된 정관에 인증을 받을 때는 부담하는 4만엔에 달하는 인지료를 면제하는 혜택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한다²⁰⁾. 이에 비추어 우리의 경우에도 전자공증이 도입되는 초기에는 전자공증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유인책이 필요하리라 본다.

다섯째, 정보화사회가 어느 정도 속도로 이루어질 지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으나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한 동안 병존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진 정보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교부받을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²¹⁾. 반대로 종이문서인 사서증서에 대하여 이를 스캔하여 생성한 파일에 공증인의 전자서명을 붙여 전자문서로 만들고 이를 소위 「사

20)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인지세법 개정으로 정관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21) 법무부가 마련한 공증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서면교부제도를 인정하고 있다(제66조의5 제5항).

22) 인증한 사서증서는 사인이 작성한 부분과 공증인이 작성한 부분이 결합된 문서이다. 따라서 인증한 사서증서의 등본인증을 인정한다면 이는 기존 공증인법상 인증개념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증서의 전자등본」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창설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종이문서인 사서증서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그 인증한 사서증서에 관하여 공증인이 직접 이를 스캔하여 생성한 파일에 공증인의 전자서명을 붙이거나 당사자가 스캔한 파일에 담긴 내용이 인증한 사서증서원본과 동일한 내용임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파일에 공증인의 전자서명을 붙여 전자문서로 만들고 이를 소위 「인증한 사서증서²²⁾의 전자등본」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전자거래가 활성화된다하여도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함께 사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전자등본제도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전자거래의 활성화나 전자정부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고자료 ①

선서인증에 관한 법무부 공증인법
개정(신설)안

제57조의2(선서인증) ①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정관인증시 2통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 및 제3항(2통 중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공증인이 보존한다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벌칙) 제57조2제1항 또는 제6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임을 알면서 선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공증에 관한 법무부 공증인법
개정(신설)안

제66조의3(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사무의 취급 등) ①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공증인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전자문서에 관한 공증사무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증인(이하 '지정공증인'이라 한다)이 취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공증인이 취급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공증사무에 대하여는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의 규정 외에 지정공증인이 취급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공증사무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4(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당사자가 지정공증인 앞에서 전자문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전자문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본인이 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

② 지정공증인이 전자문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지정공증인 앞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7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증의 촉탁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하여는 제30조도 준용한다.

제66조의5(인증한 전자문서 정보의 보존 등)

① 제66조의4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지정

공증인은 인증한 전자문서에 수록된 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은 지정공증인에게 제66조의4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와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의 보관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받은 지정공증인은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보관료를 받는다.

④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전자문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는 지정공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1.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에 수록된 정보가 제1항에 따라 보존한 정보와 동일하다는 증명

2.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전자문서와 동일한 정보의 제공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로서 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4항의 청구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66조의6(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등) ①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4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에 수록된 정보 및 이에 첨부한 정보에 대하여, 제66조의5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증명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나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서

명

2. 지정공증인이 제1호의 조치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것

② 제1항제2호의 정보는 법무부장관이 만든다.

제66조의7(전자공증관리센터)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전자문서 및 인증 정보의 안전한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공증관리센터를 둔다.

② 전자공증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②

이하 자료는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www.moj.go.jp)에 전자공증에 관하여 안내하고 있는 내용 중 진행절차에 관하여 번역한 자료(법무부 제공)로서 우리나라에 전자공증이 도입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진행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전자문서의 인증(정관인증 포함)의 촉탁절차

촉탁인이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고, 그 전자문서에 지정공증인이 인증을 부여함에 따라, 전자문서에 부여된 전자서명이 진정하다는 것(전자서명이 작성 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되게 됩니다.

※ 전자공증제도를 이용할 때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사무소 창구에서 납부하게 됨. 자세한 내용은 지정공증인에게 문의.

※ 전자문서 인증의 촉탁을 할 때에 첨부하는 전자문서의 파일명은, 반각 영·수자(확장자를 제외하고 31자 이내)가 아니면 시스템상 처리할 수 없으므로 유의 바람.

① 전자증명서의 취득

전자문서의 인증을 촉탁함에 있어서는 전자증명서를 취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공증제도로 이용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업등기에 기초한 전자증명서」(전자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전자인증등기소)
- 「Accredited Sign 퍼블릭 서비스2」(일본 인증서비스 주식회사)
- 「비즈니스인증서비스타이프 1-G (행정서 사용전자증명서)」(일본상업회의소)
- 「공적 개인인증 서비스」(지방공공단체)
- 「일본사법서사연합회 인증서비스」(일본사법서사연합회)

※ 전자증명서를 취득할 때에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전자증명서 중에는 IC카드에 저장되어 발행된 것이 있고, 이것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IC카드 리더가 필요합니다.

② 사서증서를 전자파일로 작성

이 전자파일을 「전자적기록(전자문서)」이라고 합니다.

전자문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에 제출 가능한 파일 종류는 전자서명付 PDF 파일(.pdf)입니다.

PDF 문서를 작성함에는 소프트웨어 AdobeAcrobat(아도비 시스템즈社)가 필요합니다.

③ 공증인에의 연락

전자문서의 인증을 촉탁하기 전에 촉탁을 할 공증인에게 전화 또는 FAX로 연락을 합니다.

공증인이 촉탁내용에 대해서 불비점이 없

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④ 전자문서에의 디지털 서명의 부여

위 ②에서 작성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부여합니다.

⑤ 사전준비

법무성 온라인신청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촉탁인의 컴퓨터에 인스톨 하는 등 환경설정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⑥ 신청자 정보 사전등록

법무성 온라인신청 시스템에 액세스하여 메인화면의 「신청하기」를 선택 → 신청하기 화면의 「사용자 등록화면에 링크」를 선택 → ID, 패스워드, 전화번호 등을 등록합니다.

한편, 메일주소의 등록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등록하면 촉탁정보가 접수되었을 때 (17) 메일이 발송됩니다.

⑦ 법무성 온라인(on-line)신청 시스템에 로그인

법무성 온라인신청 시스템에 액세스하여 메인화면의 「신청하기」를 선택 → 「신청하기 화면의 신청시스템 로그인 화면에 링크」를 선택 → 로그인 화면에 ⑥에서 등록한 ID,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 합니다.

⑧ 절차 양식 보기의 표시

메인메뉴 화면의 「신청·신고」를 선택 →

신청·신고 메뉴 화면의 「신규작성」을 선택 → 절차보기 화면에서 「전자공증관계절차」를 선택 → 절차 양식 보기 화면이 표시 됩니다.

⑨ 절차 양식의 보존

절차 양식 보기 화면에서 「전자문서의 인증 촉탁」을 선택 → 선택해서 양식을 보존할 폴더를 지정하는 화면이 표시되면 보존처의 폴더를 지정 → 「보존」을 선택 → 신청 메뉴 화면이 표시됩니다.

⑩ 절차 양식의 작성

신청메뉴 화면에서 「표시/입력」을 선택 → 「전자문서의 인증 촉탁」의 입력화면이 표시되면 필요한 사항을 입력 → 입력을 종료하면 「보존」을 선택 → 신청메뉴 화면이 표시됩니다.

인증을 받은 전자문서의 보존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 문서를 보존하기」의 체크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체크를 누락한 경우에는 이후에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⑪ 전자문서의 첨부

신청메뉴 화면에서 「첨부서류」를 선택 → 첨부서류보기 화면이 표시되면 「추가」를 선택 → 첨부서류의 종별을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되면 첨부서류를 선택 → 첨부서류(파일)을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되면 자신의 컴퓨터에 보존되어 있는 전자문서 보존처를 열고, 첨부하고 싶은 전자문서를 지정 → 「열기」를 선택 → 첨부서류보기 화면의

첨부파일명란에 선택한 서류가 화면에 표시 → 「돌아가기」를 선택 → 신청 메뉴 화면이 표시됩니다.

한편, 인증을 받는 전자문서(1개) 이외의 전자문서는 첨부할 수 없습니다.

⑫ 디지털 서명의 부여(매체의 선택)

신청메뉴 화면에서 「디지털서명」을 선택 → 전자증명서의 매체를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되면 「IC 카드」 또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⑬ 디지털 서명의 부여(파일의 경우)

「파일」을 선택하면, 이용하는 전자증명서 파일을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되므로 촉탁 정보를 작성한 자가 자신의 컴퓨터 상에서 사전에 작성·취득한 전자증명서 파일의 보존처를 표시하여 전자증명서 파일을 선택 → 「열기」를 선택 → 전자증명서에 액세스하기 위한 패스워드를 입력 → 「확정」을 선택 → 신청메뉴 화면이 표시됩니다.

⑭ 디지털 서명의 부여(IC카드의 경우)

「IC 카드」을 선택하면, IC 카드를 확인하는 화면이 표시되므로 IC 카드가 바르게 IC 카드 리더에 들어가 있음을 확인하고 「了解(OK)」를 선택 → 전자증명서에 액세스하기 위한 패스워드를 입력 → 「확정」을 선택 → 서명부여 완료 통지가 표시되면 「了解」을 선택 → 신청메뉴 화면이 표시됩니다.

⑮ 촉탁 정보의 송신

신청메뉴 화면에서 「작성종료」를 선택 →

「예」를 선택 → 미송신 절차보기 화면이 열리면 송신하는 절차(전자문서의 인증 촉탁)의 송신대상란에 체크하고 「송신실행」을 선택 → 송신을 받은 온라인신청 시스템에서 서명검증 등이 이뤄지고, 그 결과가 신청의사 확인 화면에 표시됩니다. 회선의 상황에 따라서는 신청의사 확인 화면의 표시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가 이상한 때에는 예러가 표시되므로 유효한 전자증명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고 재송신해 주십시오.

⑯ 신청 의사의 확인

신청의사 확인 화면에서 「신청확정」을 선택 → 촉탁정보가 온라인신청 시스템에 도달하면 도달통지 화면이 표시됩니다.

⑰ 도달통지의 확인

도달통지 화면에서 신청수신결과를 확인하고, 「도달확인표 보존」을 선택합니다. 도달확인표에는 신청번호, 도달일자 기록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도달확인표 보존」을 선택해주세요(신청번호는 나중에 당해 신청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 촉탁정보가 접수되면 처리상황보기 화면의 「코멘트」란에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⑱ 공증사무소 방문

촉탁된 전자문서의 내용 등에 대해서 촉탁을 받은 공증인이 면전에서 심사하고, 촉탁인이 전자서명을 행하였음을 인증하므로, 촉탁인은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⑲ 수수료 납부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공증인이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부여하게 되는데, 전자서명을 부여하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 받는 수가 있습니다.

⑳ 전자문서의 인증·교부

공증인이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부여하고, 전자데이터로 교부하므로 전자매체(플로피-디스크, CD-R, CD-RW 또는 USB 메모리)를 지참해주세요 (인터넷을 경유해서 교부받을 수는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2. 일자정보의 부여(확정일자 부여)의 청구

전자적인 정보에 지정공증인이 일자정보를 부여하고 이에 전자서명을 하면 이 정보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간주되어(민법시행법 제5조 제1항, 제2항) 일자정보가 부여된 정보에는 민법시행법 제4조의 「완전한 증거력」이 인정됩니다.

※ 전자공증제도를 이용할 때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사무소 창구에서 납부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정공증인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일자정보의 부여를 청구할 때에 첨부하는 전자문서의 파일명은, 반각 영·수자(확장자를 제외하고 31자 이내)가 아니면 시스템상 처리할 수 없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① 일자정보를 부여받을 문서를 전자 파일로 작성

일자정보를 부여받을 문서를 전자파일(.Pdf, .xml 또는 .txt 형식)로 작성(이 전자파일을 「전자적기록(전자문서)」라 합니다).

※ 일자정보의 부여 청구에 대해서는 전자문서에 디지털 서명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공증인과의 연락

일자정보의 부여를 청구하기 전에 청구할 공증인에게 전화 또는 FAX로 연락합니다. 공증인이 청구내용에 대해서 불비가 없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③ 사전준비

법무성 온라인신청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청구인의 컴퓨터에 인스톨하는 등의 환경설정을 해야 합니다.

④ 신청자 정보 사전등록

법무성 온라인신청 시스템에 액세스하여 톱화면의 「신청하기」를 선택 → 신청하기 화면의 「사용자 등록화면에 링크」를 선택 → ID, 패스워드, 전화번호 등을 등록합니다.

한편 메일주소의 등록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만, 등록하면 청구 정보가 접수되었을 때(⑫) 메일이 발송됩니다.

⑤ 법무성 온라인(on-line) 신청 시스템에 로그인

법무성 온라인신청 시스템에 액세스하여 메인 화면의 「신청하기」를 선택 → 「신청하기 화면의 신청시스템 로그인 화면에 링크」를 선택 → 로그인 화면에서 1에서 등록한 ID,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⑥ 절차 양식 보기의 표시

메인메뉴 화면의 「신청·신고」를 선택 → 신청·신고 메뉴 화면의 「신규작성」을 선택 → 절차보기 화면의 「전자공증관계절차」를 선택 → 절차 양식 보기 화면이 표시 됩니다.

⑦ 절차 양식의 보존

절차 양식 보기 화면에서 「일자정보 부여의 청구」를 선택 → 선택한 양식을 보존할 폴더를 지정하는 화면이 표시되면 보존처의 폴더를 지정 → 「보존」을 선택 → 신청메뉴 화면이 표시됩니다.

⑧ 절차 양식의 작성

신청메뉴 화면으로부터 「표시/입력」을 선택 → 「일자정보 부여의 청구」의 입력화면이 표시되면 필요한 사항을 입력 → 입력을 끝내면 「보존」을 선택 → 신청메뉴 화면이 표시됩니다.

일자정보의 부여를 받은 전자문서의 보존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서 문서를 보존하기」의 체크란에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에 동일 정보의 제공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⑨ 전자문서의 첨부

신청메뉴 화면으로부터 「첨부서류」를 선택 → 첨부서류보기 화면이 표시되면 「추가」를 선택 → 첨부서류의 종별을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되면 「첨부서류」를 선택 → 첨부서류(파일)를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되면 자신의 컴퓨터에 보존되어 있는 전자문서의 보존처를 열어 첨부하고자 하는 전자문서를 지정 → 「열기」를 선택 → 첨부서류보기 화면의 첨부파일명란에 선택한 서류가 화면에 표시 → 「돌아가기」를 선택 → 신청메뉴 화면이 표시됩니다.

한편, 일자정보를 부여받은 전자문서(1개) 이외의 전자문서는 첨부할 수 없습니다.

⑩ 청구 정보의 송신

신청메뉴 화면에서 「작성완료」을 선택 → 「예」를 선택 → 미송신 절차보기 화면이 열리면 송신할 절차(일자정보 부여의 청구)의 송신 대상란에 체크하고 「송신실행」을 선택하면 신청의사 확인화면이 표시됩니다. 회선 상황에 따라서는 신청의사 확인화면의 표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⑪ 신청 의사의 확인

신청의사 확인화면에서 「신청확정」을 선택 → 청구정보가 온라인신청 시스템에 도달하면 도달통지 화면이 표시됩니다.

⑫ 도달 통지의 확인

도달통지 화면에서 신청수신결과를 확인하고 「도달확인표 보존」을 선택합니다. 도달확인표에는 신청번호, 도달일자 기록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도달확인표 보존」을 선택해 주세요(신청번호는 나중에 당해 신청을 특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구정보가 접수되면 처리상황보기 화면의 「코멘트」란에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⑬ 공증사무소에의 방문·수수료 납부

공증인이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으면 공증인이 전자문서에 일자정보를 부여하게 되는데, 일자정보를 부여하기 전에 공증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납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⑭ 일자정보의 부여·전자문서의 취득

공증인이 일자정보를 부여한 전자문서를 인터넷을 경유하여 취득합니다(공증사무소에서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취득방법에 대해서는 신청자 조작 가이드 [일반신청편]의 제1장2.2 및 제2장5.2「공문서(설명서)의 취득」을 참조바랍니다.

3. 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의 청구

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이란, 전자문서의 인증 또는 일자정보를 부여받은 전자적 기록(전자공문서)의 내용을 압축해서 얻어진 정보(해쉬 값)와, 지정공증인이 보존하고 있는 해쉬 값을 비교함으로써 청구인이 보유하는 정보가 해당 공증인에 의해 인증되거나 일자정보가 부여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 전자공증제도를 이용할 때의 수수료에 대

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사무소 창구에서 납부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정공증인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① 전자증명서의 취득

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전자증명서를 취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공증제도에서 이용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업등기에 기한 전자증명서」(전자인증제도를 운용하는 전자증명등기소)
- 「AccreditedSign 퍼블릭 서비스 2」(일본 인증서비스 주식회사)
- 「비지니스 인증서비스 타입 1-G (행정서 사용전자증명서)」(일본상공회의소)
- 「공적 개인인증 서비스」(지방공공단체)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인증서비스」(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

※ 전자증명서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전자증명서 중에는 IC카드에 보존되어 발행되는 것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IC카드 리더가 필요합니다.

② 전자공문서의 준비

공증인으로부터 전자문서의 인증 또는 일자정보를 부여받은 전자공문서(파일)를 준비합니다.

③ 공증인에의 연락

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을 청구하기 전에 청구를 할 공증인에게 전화 또는 FAX에 연락합니다.

공증인이 청구내용에 대해서 불비점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는 것입니다.

④ 사전준비

법무성 온라인신청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청구인의 컴퓨터에 인스톨하는 등 환경설정을 해야합니다.

⑤ 신청자 정보 사전등록

법무성 온라인신청 시스템에 액세스하여 메인 화면의 「신청하기」를 선택 → 신청하기 화면의 「사용자등록화면에 링크」를 선택 → ID, 패스워드, 전화번호 등을 등록합니다.

한편 메일주소의 등록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등록하면 청구 정보가 접수되었을 때 (2)에 메일이 발송됩니다.

⑥ 법무성 온라인(on-line) 신청 시스템에 로그인

법무성 온라인신청 시스템에 액세스하여 메인 화면의 「신청하기」를 선택 → 신청하기 화면의 「신청시스템 로그인화면에 링크」를 선택 → 로그인 화면에서 3에서 등록한 ID,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⑦ 절차 양식 보기의 표시

메인메뉴 화면의 「신청·신고」를 선택 → 신청·신고 메뉴 화면의 「신규작성」을 선택

→ 절차보기 화면의 「전자공증 관계절차」를 선택 → 절차 양식 보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⑧ 절차 양식의 보존

절차 양식 보기 화면에서 「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의 청구」를 선택 → 선택한 양식을 보존할 폴더를 지정하는 화면이 표시되면 보존처의 폴더를 지정 → 「보존」을 선택 → 신청메뉴 화면이 표시됩니다.

⑨ 절차 양식의 작성

신청메뉴 화면에서 「표시/입력」을 선택 → 「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의 청구」의 입력화면이 표시되면 필요한 사항을 입력 → 입력을 종료하면 「보존」을 선택 → 신청메뉴 화면이 표시됩니다.

⑩ 전자공문서의 첨부

신청메뉴 화면에서 「첨부서류」를 선택 → 서류보기 화면이 표시되면 「추가」를 선택 → 첨부서류의 중별을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되면 「공문서」를 선택 → 공문서가 있는 폴더를 지정하는 화면이 표시되면 자신의 컴퓨터에 보존되어 있는 전자문서의 보존처를 열고, 첨부하고자 하는 전자공문서(폴더)를 지정 → 「열기」를 선택 → 첨부서류 보기 화면의 첨부 파일명란에 선택한 서류가 화면에 표시 → 「돌아가기」를 선택 → 신청메뉴 화면이 표시됩니다.

또한 전자공문서(1개) 이외의 전자문서는 첨부할 수 없습니다.

⑪ 디지털 서명의 부여(매체의 선택)

신청메뉴 화면에서 「디지털 서명」을 선택
→ 전자증명서의 매체를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되면 「IC카드」 또는 「파일」을 선택합
니다.

⑫ 디지털 서명의 부여(파일의 경우)

「파일」을 선택하면, 이용하는 전자증명서
파일을 선택 화면이 표시되므로 청구정보
를 작성한 사람이 자신의 컴퓨터상에서 사
전에 작성·취득한 전자증명서 파일의 보
존처를 표시하고 전자증명서 파일을 지정
→ 「열기」를 선택 → 전자증명서에 액세스
하기 위한 패스워드를 입력 → 「확정」을 선택
→ 신청메뉴 화면이 표시됩니다.

⑬ 디지털 서명의 부여(IC카드의 경우)

「IC 카드」를 선택하면 IC 카드를 확인하는
화면이 표시되므로 IC 카드가 올바르게 IC
카드 리더에 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了解
(OK)」를 선택 → 전자증명서에 액세스하
기 위한 패스워드를 입력 → 「확정」을 선택
→ 서명부여 완료 통지가 표시되면 「了解」
를 선택 → 신청메뉴 화면이 표시됩니다.

⑭ 청구 정보의 송신

신청메뉴 화면에서 「작성종료」를 선택 →
「예」를 선택 → 미송신 절차 보기 화면이
열리면 송신하는 절차(정보의 동일성에 관
한 증명의 청구)의 송신 대상란에 체크하고
「송신실행」을 선택 → 송신을 받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서명검증 등을 행하고, 그
결과가 신청의사확인 화면에 표시됩니다.

회선의 상황에 따라서는 신청의사 확인서
면의 표시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
과가 이상한 것에 대해서는 예러가 표시되
므로 유효한 전자증명서에 의해 전자서명
을 한 뒤 재송신하십시오.

⑮ 신청 의사의 확인

신청의사확인 화면에서 「신청확정」을 선택
→ 청구정보가 온라인신청 시스템에 도달
하면 도달통지 화면이 표시됩니다.

⑯ 도달통지의 확인

도달통지 화면에서 신청수신결과를 확인하
고 「도달확인표 보존」을 선택합니다. 도달
확인표에는 신청번호, 도달일자가 기록되
어 있으므로 반드시 「도달확인표 보존」을
선택해 주세요(신청번호는 나중에 당해 신
청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 합니다). 청구정
보가 접수되면 처리상황보기 화면의 「코멘
트」란에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⑰ 공증사무소 방문·수수료 납부

공증인이 해쉬 값을 비교하여 보존 중인 전
자문서에 기록된 정보와 동일하면, 그 취지
의 증명을 부여하게 되는데, 증명을 부여하
기 전에 공증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납부받
을 수가 있습니다.

⑱ 증명의 부여·전자문서의 취득

보존되어 있는 전자문서에 기록된 정보와
동일하다는 취지를 공증인이 증명한 전자
문서를 인터넷을 경유하여 취득합니다(공
증사무소에서는 취득할 수 없으므로 주의

해 주세요). 취득방법에 대해서는 신청자 조작가이드 [일반신청편]의 제1장2.2 또는 제2장5.2「공문서(증명서)의 취득」을 참조바랍니다.

4. 동일한 정보의 제공의 청구

촉탁인·청구인의 희망에 의해 지정공증인이 전자사서증서의 인증 또는 전자확정일자부여를 수행한 때에 청구에 의하여 동일내용의 정보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청구에 의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본의 교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서면의 교부에 의한 제공도 가능합니다.

※ 전자적 기록의 인증 촉탁 또는 일자정보 부여의 청구시에 동일내용의 정보의 보존을 청구되지 않은 경우는 동일한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전자공증제도를 이용할 때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사무소 창구에서 납부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정공증인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원칙적으로 아래의 법무성 온라인(on-line) 신청 시스템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정보의 제공의 청구를 받게 되는데, 인증 등을 받은 전자문서를 공증인사무소에서 교부받을 때에 서면에 의한 동일 정보의 제공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공증사무소의 창구에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전자증명서의 취득

동일한 정보의 제공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전자증명서를 취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공증제도에서 이용 가능한 전자 증명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업등기에 기한 전자증명서」(전자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전자인증등기소)
- 「AccreditedSign 퍼블릭 서비스2」(일본 인증서비스 주식회사)
- 「비즈니스인증서비스 타입 1-G (행정서사용전자증명서)」(일본상업회의소)
- 「공적 개인인증 서비스」(지방공공단체)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인증서비스」(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

※ 전자증명서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필요합니다.

※ 전자증명서 중에는 IC카드에 저장되어 발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IC카드 리더가 필요합니다.

② 공증인에의 연락

동일 정보의 제공을 청구하기 전에 청구를 할 공증인에게 전화 또는 FAX로 연락을 합니다.

공증인이 청구내용에 대해 불비점이 없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③ 사전준비

법무성 온라인신청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청구인의 컴퓨터에

인스-톨하는 등의 환경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④ 신청자 정보 사전등록

법무성 온라인신청 시스템에 액세스하여 메인화면의 「신청하기」를 선택 → 신청하기 화면의 「사용자등록화면의 링크」를 선택 → ID, 패스워드, 전화번호 등을 등록합니다.

한편, 메일주소의 등록은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등록하면 청구정보가 접수되었을 때 (17) 메일 발송됩니다.

⑤ 법무성 온라인(on-line) 신청 시스템에 로그인

법무성 온라인신청 시스템에 액세스하여 메인화면의 「신청하기」를 선택 → 신청하기 화면의 「신청시스템 로그인 화면에 링크」를 선택 → 로그인 화면에 에서 등록한 ID, 패스워드를 입력해 로그인합니다.

⑥ 절차 양식 보기의 표시

메인메뉴 화면의 「신청·신고」를 선택 → 신청·신고 메뉴 화면의 「신규작성」을 선택 → 절차보기 화면의 「전자공증 관계절차」를 선택 → 절차 양식 보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 신청자 조작가이드 [일반신청편]

⑦ 절차 양식의 보존

절차 양식 보기 화면에서 「동일한 정보의 제공 청구」를 선택 → 선택한 양식을 보존할 폴더를 지정하는 화면이 표시되면 보존

처 폴더를 지정 → 「보존」을 선택 → 신청 메뉴 화면이 표시됩니다.

⑧ 절차 양식의 작성

신청메뉴 화면에서 「표시/입력」을 선택 → 「동일한 정보의 제공 청구」의 입력화면이 표시되면 필요한 사항을 입력 → 입력을 종료하면 「보존」을 선택 → 신청메뉴 화면이 표시됩니다.

다만, 전자문서를 첨부할 수는 없습니다.

⑨ 디지털 서명의 부여(매체의 선택)

신청메뉴 화면에서 「디지털 서명」을 선택 → 전자증명서의 매체를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되면 「IC 카드」 또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⑩ 디지털 서명의 부여(파일의 경우)

「파일」을 선택하면, 이용할 전자증명서 파일을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되므로 청구정보를 작성한 사람이 자신의 컴퓨터 상에서 사전에 작성·취득한 전자증명서 파일을 보존처를 표시하고 전자증명서 파일을 지정 → 「열기」를 선택 → 전자증명서에 액세스하기 위한 패스워드를 입력 → 「확정」을 선택 → 신청메뉴 화면이 표시됩니다.

⑪ 디지털 서명의 부여(IC카드의 경우)

「IC 카드」을 선택하면, IC 카드를 확인하는 화면이 표시되므로 IC 카드가 올바르게 IC 카드 리더에 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了解(OK)」를 선택 → 전자증명서에 액세스하기 위한 패스워드를 입력 → 「확정」을 선택

→ 서명부여 완료 통지가 표시되면 「了解」을 선택 → 신청메뉴 화면이 표시됩니다.

⑫ 청구 정보의 송신

신청메뉴 화면에서 「작성종료」를 선택 → 「예」를 선택 → 미송신 절차 보기 화면이 열리므로 송신할 절차(동일 정보 제공의 청구)의 송신 대상란에 체크하고 「송신실행」을 선택 → 송신을 받은 온라인신청 시스템에서 서명검증 등이 이뤄지고, 그 결과가 신청의사 확인화면에 표시됩니다. 회선 상황에 따라서는 신청의사 확인화면의 표시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가 이상한 때에는 에러가 표시되므로 유효한 전자증명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한 후 재송신 바랍니다.

⑬ 신청 의사의 확인

신청의사 확인화면에서 「신청확정」을 선택 → 청구정보가 온라인신청 시스템에 도달하면 도달통지 화면이 표시됩니다.

⑭ 도달 통지의 확인

도달통지 화면에서 신청수신결과를 확인하고 「도달확인표 보존」을 선택합니다. 도달확인표에는 신청번호, 도달일자가 기록되므로 반드시 「도달확인표 보존」을 선택하세요(신청번호는 나중에 당해 신청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청구정보가 접수되면 처리상황 보기 화면의 「코멘트」란에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⑮ 공증사무소 방문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촉탁인 등에 한정되므로 청구를 받은 공증인에게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⑯ 수수료의 납부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공증인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만, 제공을 하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⑰ 동일한 정보의 제공

공증인이 동일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데이터로 제공하므로 전자데이터로 교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자매체(플로피 디스크, CD-R, CD-RW 또는 USB 메모리)를 지참해주세요(인터넷을 경유해서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바랍니다).

공증인법 개정안 공청회 토론자료

-새로운 도입되는 공증제도 중심으로-

김도형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I. 개요

개정법안은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증관련 법률을 공증인법으로 일원화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을 공증인법에서 일괄 규정하고 공증인의 임명 및 인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공증인의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하여 공증인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공증협회를 대한공증인협회를 명칭을 변경하여 강제단체화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대한공증인협회에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사인 간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건을 보호함과 아울러 장래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예방사법의 영역에서 차지하는 공증인의 역할과 공증제도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증관련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증사무소의 난립과 과당경쟁에 따른 공증사무의 부적정한 집행을 방지하고자 공증인의 임명 내지 인가기준 등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하려는 개정법안의 방향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이하에서 개정법안의 내용이 소송실무나 재판제도의 운영상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새로이 도입되는 공증제도 - 선서인증제도, 전자공증제도, 번역인증제도 - 를 중심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II.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1. 선서인증제도

개정법안은 종래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인증만으로는 증거력이 부족하다는 고려와 외국 기관이나 기업의 선서인증서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경우에 선서인증을 부여하고, 증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선서한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선서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선서인증제도는 주재발표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나름대로의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할 때 그 도입과 관련하여 특히 허위선서시 형사처벌 방안은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선서 관련 규정의 보완 필요

선서인증제도에 있어 촉탁인의 선서는 문서내용의 진실을 보장함으로써 증명력을 높이고 그 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촉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의 취지와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고, 선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서는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공증인으로 하여금 촉탁인에 대하여 선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제재를 받는다는 경고를 하도록 절차적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¹⁾, 아울러 증언능력에 대응하여 선서능력에 관한 규정²⁾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발표자의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허위선서시의 형사처벌 도입 관련

□ 소송절차에서의 진실 발견에 대한 장애

선서인증제도 도입시, 선서의 대상이 된 허위기재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선서인증문서의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려 하지만, 선서만으로 허위의 인증문서 작성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³⁾.

허위선서죄가 도입될 경우, 허위 선서를 한 촉탁인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인증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면 허위선서죄 또는 위증죄 중 하나가 반드시 성립하게 되는데, 이 경우 증인으로 소환된 촉탁인으로서의 진술을 반복함에 따라 곧바로 허위선서죄이든 위증죄

1) 독일에서는 선서증인시 선서할 자가 선서문을 기재하고 이를 낭독함으로써 선서를 하게 되고, 공증인은 선서하는 자에게 선서의 의미를 인지시켜야 한다고 하여 선서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김상영, 선서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결과보고서(2006년), 13쪽).

2) 민사소송절차에서는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선서무능력자로 규정하여 선서 없이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322조).

3) 수사기관은 물론,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대한 거짓신고를 범죄시키는 국민의식이 정착되어 있는 선진외국과 달리 법정에서 사실만을 말하기로 선서하고도 위증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기관도 아닌 공증인의 면전에서 선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증문서의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무리일 수 있다.

이든 형사처벌의 위협에 노출되기 보다는 당초 인증서 작성시 진술한 대로 법정에서 진술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회피하려 들 개연성이 높다. 즉 당사자 등의 유도나 회유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선서에도 불구하고 인증서 작성시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에 법정에서 그 진술을 뒤집고 사실대로 진술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에서 허위선서죄의 도입은 촉탁인에게 진실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봉쇄할 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 과거의 허위진술을 반복함으로써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 재판절차의 형해화 우려

사실관계를 비롯한 분쟁의 실체에 대한 조사는 법정에서 당사자의 공방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구술주의, 공판중심주의 등 우리의 재판제도에 상 대원칙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하여야 할 때이다.

그런데 허위선서에 대한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선서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오히려 종전의 허위진술을 시정하고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됨은 물론, 재판이 실제적 진실 발견을 위한 생생한 공방의 장이 되지 못하고, 선서인증서가 실제로 선서하고 작성되었는지 등 그 성립과정의 적법성 여부가 확인되면 이에 의존하려 드는 서면주의 재판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⁴⁾.

□ 공증실무와 일반 국민의 의식에 비추어 부작용 우려

종래 우리의 공증실무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원이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반대당사자의 참여나 반대신문권의 보장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어떻게 보면 밀폐된 사적인 공간에 진행되고, 한쪽 당사자의 요청 등에 기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거나 이미 작성된 문서에 서명날인만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재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경우 선서시의 공증인의 참여 여부나 선서의 효력 유무 등 선서인증서의 적법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당사자의 반발 등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 소송당사자의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와의 불균형

허위 선서를 한 촉탁인은 후일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데, 민사소송절차에서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법정이 아닌 곳에서 공증인 앞에 선서한 촉탁인에 대하여 허위진

4) 절차적으로 반대신문권의 보장, 직접주의 등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선서인증제도의 도입 배경으로 거론되는 유용성은 그 범위내에서 반감된다고 할 것이다.

술을 이유로 형사처벌(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아니한다⁵⁾.

□ 수사기관 기타 국가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을 처벌하지 않는 것과의 불균형

현행법상 허위의 진술을 처벌하는 대표적 규정으로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위증죄와 수사 또는 징계절차의 개시조건이 된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무고죄가 있다. 반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허위 진술은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거나 증거를 조작 또는 위조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으로 개별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예: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충족하여 처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위진술 자체를 이유로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증인 앞에서 선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진술의 정도나 방법, 경중을 불문하고 허위진술 자체를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수사기관 기타 국가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을 예외적으로 처벌하려는 현행 법규나 판례의 태도와 비교할 때 균형이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칫 인증서의 기재내용 중에 일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었다는 이유로 범죄자를 대량으로 양산할 우려도 없지 아니하다.

□ 과태료 집행절차상의 문제가 형사처벌 도입의 논거가 될 수는 없음

선서의 허위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규명하기 곤란하여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과태료 집행절차상의 문제가 곧바로 형사처벌 도입의 논거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형사처벌 도입시의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면 그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과태료 집행절차상의 문제를 제도적, 실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이기 때문이다.

□ 외국의 유사 제도와와의 단순 비교는 무리

선서인증제도는 영미의 선서진술서(Affidavit), 독일의 서면상의 증인신문(schriftliche Zeugenvernehmung) 내지 선서신문(eidliche Vernehmung)과 비교되는데, 위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선서시 형사처벌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국가들과 우리는 선서에 관한 국민 일반의 인식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⁶⁾. 또한 독일에서 서면상의 증인신문제도는 우리 민사소송법에도 이미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고(민사소송법 제310조)⁷⁾, 선서신문제도는 공증인이 사인의 요청을 받아 외국의 법에 따라서 또는 외국 정부기관의 규정

5) 일본에서도 허위선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제재를 10만 엔 이하의 과료로 한 것은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와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김상영, 앞의 글, 32쪽).

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외국에서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독일 국내의 사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선서신문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⁸⁾ 선서인증제도와는 그 내용을 달리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법안의 선서인증제도의 모델이 된 일본에서 허위선서에 대하여 우리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제재(10만엔 이하의 과료)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나 근거 및 허위선서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채택한 후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전자공증제도 관련

전자문서의 진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전자공증의 도입은 법원의 부동산 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은 물론, 장차 각종 전자소송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은 시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나,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전자화된 종이문서(스캔 파일)에 대한 공증 허용 필요

개정법안이 스캔문서에 대한 전자공증을 허용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한 전자공증을 하더라도 의사록 파일에 일일이 전자서명을 하여야 할 경우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전자공증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공증 대상 문서 및 공증 작성 실무를 고려할 때 종이문서를 스캔하는 방법으로 전자화한 전자문서도 공증인의 전자인증대상으로 허용하고, 이를 개정안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전자거래기본법에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문서를 스캔하여 제출한 경우 그 문서를 원본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며, 이 경우 원본 보관에 관한 처리사항의 검토(규정 마련)가 필요하다.

(2) 공증인의 전자인증 확인 방법

전자공증된 전자문서를 실제 신청행위에 사용할 경우, 등기소나 법무사는 그 전자인증이 자격

6) 미국에서 선서란 어떤 사람(종종 선서진술인이라 불리우는)이 자신의 진술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 또는 절대자에 호소하여 엄숙한 맹세 또는 약속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증인은 진술인에게 선서를 시행함에 있어 선서의 엄숙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선서를 시행하기 전에 선서진술인의 오른손을 들게 하거나 성경책 위에 놓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김상영, 앞의 글, 6~7쪽).

7) 이에 의하면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인에 대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변론에서 현출함으로써 일응 증거조사를 마치게 되나, 필요한 경우에 서면증언을 검토하여 증인에 대하여 출석·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8) 김상영, 앞의 글, 13쪽.

자(지정공증인)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자공증의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관하여 포괄적이거나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예컨대 개정안 제66조의7 전자공증관리센터에 관한 규정에서 등기소 등이 전자공증관리센터와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하위규정을 통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번역인증제도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09조 제3호)⁹⁾. 하지만 번역문이 제출되더라도 번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는 판결의 오류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소송실무상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그 번역문의 정확성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제출된 번역문의 정확성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

번역인증제도의 도입으로 번역된 내용이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였음이 인증된 경우에 인증 번역문이 포함된 소송서류의 증거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원활하고 신속한 소송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번역자가 명시됨에 따라 원문의 성실하고 정확한 번역에 대한 간접적인 담보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번역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원문 및 번역문의 내용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9) 제109조 (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문서로서 그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번역문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공증협회의 강제단체화

안 원 모

대한공증협회 섭외이사

1. 공증협회 강제단체화 추진 배경

- 대한공증협회는 1979년에 설립된 이래 공증부책을 제작·배부하고, 공증사무에 지침이 되는 교재를 작성·배부하였으며, 정기적으로 공증업무 종사자에 대한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1999년도 공증인법 개정으로 법정 임의단체로 재출범하는 계기를 맞음.
- 현재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를 통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임명공증인은 대부분 변호사 업무를 휴업한 경우로서 변호사단체가 지도·감독하기 어렵고, 법무법인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담당 변호사의 공증업무에 대하여서도 변호사단체의 성격상 공증사무를 본래적인 변호사의 업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증사무에 대하여는 사실상 지도·감독하기 어려운 형편임.
- 우리나라의 공증업무를 담당·처리하는 공증인의 수요는 약 2,000여 명에 달하고 있고, 공증인 상호간과 공증업무 감독기관인 법무부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공증업무의 개선 및 통일, 공증에 대한 국민적 신뢰향상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법무부 자체적인 지도·감독 방식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음.
- 공증인의 협회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증업무 담당자의 품위 유지, 공증사무에 대한 국가적 신뢰수준의 향상 등을 위한 협회의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함.

2. 공증협회 강제 단체화에 대한 반론

- 첫째,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존의 강제가입 단체들도 가능한 한 임의단체로 전환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최근의 흐름으로, 그동안 임의단체로 있던 공증협회를 강제단체화 하는 것은 규제완화라는 흐름에 거스를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하여 타 전문 자격사와

달리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공증인의 역할상 제도와 수수료 규정 등이 국가에 의하여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시장에서의 사적 경쟁을 통한 자율성이나 규제완화라는 측면과는 무관하다 할 것임.

- 둘째, 공증협회를 강제가입단체화 하고자 하는 큰 목적은 회원들에 대한 지도·감독·교육 등을 협회 차원에서 수행함으로써 공증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인데 그러한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구성원간에 상당부분 동질감이나 일체감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사업자 단체의 성격을 넘어서 국가로부터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체계와 권위가 있어야만 소속 구성원들의 동의와 승인을 받아낼 수 있다고 볼 때 현재의 공증협회의 기능과 성격, 방향성 등이 부족하다는 반론에 대하여
- 이는 공증협회가 그동안 임의단체로 존재하여 오고 최소한의 업무에 국한하여 활동하여 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미래의 청사진과는 무관함.

3. 공증협회 강제단체화의 필요성

(1) 자발적 공증업무 지도 및 감독으로 공증서비스 향상

- 변호사겸업공증제도 창설 당시인 1970년 말 한국의 공증업무는 임명공증인 약 18명의 독점업무로 연간 약 220,000건의 공증업무를 취급하던 것이 변호사겸업공증제도가 창설된 후 급진적으로 발전하여 2007년 11월 말 현재 공증담당자 수는 임명공증인 30명,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67개소에서 288명, 공증인가법무법인 279개소에서 1,905명 등 총 2,223명이 공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증업무 처리건수는 연간 400만건에 달하고 있음.
- 공증인 수와 업무실적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공증업무의 지도감독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 개선은 있었으나 국가사무라는 특성상 아직도 법무부 법무과 자체적으로 전국의 공증사무소 업무를 지도, 감독함으로써 이에 따른 인력부족 등 업무과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원래 법무부 소관이던 변호사업무의 지도감독이 민주화, 세계화의 조류에 따라 1983년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치로 이관되면서 법무부는 변협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가 되고 있음.
- 1979년 비인가단체로 설립된 대한공증협회의 경우 그동안 전국의 공증인들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공증사무의 개선과 통일에 공헌해 오다 1998년 12월 공증인법 개정으로 법정단체로 승격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규제완화 분위기 속에서 임의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의 공증인들에 대한 업무지도와 감독,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는 많은 지장이 초래되어 왔음.
- 협회의 강제 단체화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대국민 공증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공증인

의 전문성을 도모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시민생활과 기업경영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여 본 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법률시장 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국제기구와의 교류 등을 통한 공증의 국제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협회의 법정 강제 단체화에 따른 가치는 현저히 높다고 할 것임.

(2) 공증업무의 개선과 발전에 따른 협회 역할 제고

- 협회는 그동안 비인가단체에서 법정임의단체로 발전해 오는 동안 공정증서 작성방법의 국제화(공정증서에 외국어 병기 규정 신설, 아라비아 숫자 사용 규정)에 기여하고, 비현실적인 공증인 서류보존기간의 단축 건의, 공증인 수수료의 현실화, 상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공증서식의 개선과 신설, 공증제도의 정비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법 삽입), 공증실무에 대한 수많은 법규 해석, 직역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 등을 꾸준히 해 오으로써 공증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과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음.
- 이러한 협회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는 전국의 공증인들 모두를 가입시키는 강제단체화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사무인 공증제도의 획기적인 발전과 세계화 도약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음

(3) 공증실무 통일과 운영의 합리화 도모

- 협회는 지난 1982년 업무집행 지침서인 '공증편람'의 초판을 발행한 이래 1993년 '공증편람' 개정판 발행, 1998년 '공증편람' 보정판 발행, 2004년 '공증편람'을 전면 개정한 '공증실무'를 발행해 오고 있는바, 협회의 강제단체화가 이루어질 경우 각종 공증업무 지침서와 전문분야 간행물을 발간하여 전국의 공증인 및 그 보조자들을 상대로 공증업무의 통일성과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음.

(4) 공증업무 교육 실시

- 협회는 지난 1996년, 1998년, 2001년에 각 1회씩 자체적으로 공증인보조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증사무소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나 그후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협회가 강제단체화 함으로써 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연수나 일반연수와 같이 기존의 공증보조자 뿐만 아니라 회원인 공증인들까지도 대상으로 삼아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공증업무의 전문성을 가져올 수 있음.

(5) 대국민 공증 홍보의 활성화

- 우리 사회는 호의에 기초한 사인간 금전거래가 많은 반면, 증거를 남기는 법문화에 익숙하지 못해 사후적 법률분쟁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인간 거래시 “공증”을 통해 증거를 남기는 문화를 확산시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약속이 지켜지는 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창구가 있어야 함에도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임.
- 2007년 7월 법무부와 협회가 공동주관으로 제1회 공증주간 행사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공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향후 장기적인 공증 홍보 제도화를 위하여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함.
- 국민을 상대로 공증제도를 홍보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임의단체로서는 그 역할이 부족하다 할 것이며 강제단체화로 대국민 공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통한 공증의 세계화 도모

-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공증업무의 국제화 또한 필연적으로, 협회는 그동안 한국의 공증제도 선진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일본, 중국과의 교류는 물론 전 세계 공증인의 기능과 공증업무의 촉진, 조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국제공증협회(The International Union of Notaries, U.I.N.L)에 옵저버로 참석하고 현재 회원국 가입신청을 해 놓은 상태임.
- 그동안 공증업무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공증기구와의 교류는 정부에서도 사실상 없던 일로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협회가 임의단체라는 점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임.
- 공증업무에 관한 국제 협력을 통하여 국내 경제발전에의 기여는 물론 최상의 공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전국의 공증인들을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그래야만 한국의 공증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음.

(7) 기타

- 협회의 강제단체화는 전국의 모든 공증업무담당자와 공증보조자의 유기적인 연락을 통한 업무의 공유가 용이해지며, 회원간의 친선을 통해 공증업무 담당자간의 정보교류와 품위향상도 가져오는 이점이 있음.

4. 유사 입법례와 외국의 사례

(1) 타 전문자격사 유사 입법례

- 현재 변호사회(변호사법 제68조), 법무사회(법무사법 제7조, 제52조), 변리사회(변리사법 제11조, 2006년 제도입), 공인회계사회(공인회계사법 제42조, 2001년 제도입)가 전부 강

제가입단체로 되어 있고, 가입의무와 동시에 윤리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 징계권도 지니도록 하고 있음.

(2) 외국의 사례

① 프랑스¹⁾

- 1966년 11월 29일자 공증인의 조직에 관한 법규에 따르면 각 道마다 1개의 공증인회의소가 설치되어 회원들의 징계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관할 공증인의 공동의 권익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음.
- 이러한 공증인의 상위조직은 道공증인회의소, 지방공증인위원회, 공증인상급위원회 등이 있고, 공증인의 공증인회의소가입은 당연한 전제임.
- 징계는 공무원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징계위원회 또는 민사법원에서 이뤄지고 있음.

② 독일²⁾

- 독일 연방공증인법은 고등법원 관할 구역단위로 공증인회를 구성하고, 각 공증인회가 연방공증인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공증인회는 공증인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각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증인회장 명의의 납부고지서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이가 되며, 또한 공증인회는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증인, 시보공증인의 출석을 명하거나 일정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일정 금액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즉, 공증인회는 공증인의 강제가입을 전제로 징계 및 감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③ 스페인

- 각 대학에 소속되어야 하고, 공증인 대학은 사법당국자 및 검찰총장이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참여하는 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 공증업의 명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을 때 대학의 지도위원회가 공증인에게서 면 경고 또는 일정 금액의 징계적 벌금을 가할 수 있음.

④ 일본³⁾

- 공증인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국이나 지방법무국의 관할 구역마다 공증인회가 설립되어 있고, 전국의 공증인회가 연합하여 설립한 일본공증인연합회가 있음.
- 공증인은 그 소속하는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관할구역 내에 설립된 공증인회의의 회원이 되는 것으로, 당연 가입되도록 하고 있음.

1) 한전우, “프랑스 공증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논공 6,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12.

2) 김황식, “독일의 공증제도에 관한 고찰”, 사법행정 243, 한국사법행정학회, 1981. 3.

3) 전병서, “일본의 공증인임명제도 소개”, 법학논문집 제28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 또 공증인회는 공증인에게 비위 또는 품위를 해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취지를 그 소속하는 법무국장 또는 지방법무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⑤ 중국

○ 중국 공증법은 사회단체법인 형태로 중국공증협회를 설립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에는 지방공증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증협회는 공증업의 자율적 단체이고 정관에 기하여 활동하며 공증기구, 공증원의 업무처리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공증절차규칙과 공증기구관리방법에 따르면 공증기구는 지방과 전국 공증협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증협회는 정관과 업무규범에 의하여 공증기구와 공증원의 업무활동과 절차규정 준수를 감독할 수 있음.

5. 개정안의 내용

(1) 주요 골자

○ 변호사법의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을 본받아 공증인법 제6장의2를 개정하여 모든 공증인은 공증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대한공증협회를 강제단체로 변경하고, 협회는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부 실시하며, 공증인에 대한 연수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공증서류 통합보관 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강제단체화에 따른 실질적 조치로서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협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경우 공증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도록 하고 있음.

(2) 개정안

① 명칭 개정(개정안 제6장의2)

○ 현행법 제6장의2의 협회 명칭을 “공증협회”에서 “대한공증인협회”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타 전문자격사 단체와 마찬가지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증인의 직함을 협회의 명칭으로 함으로써 통일성을 기함.

② 협회의 목적 조항 개정(개정안 제77조의2)

○ 현행법 제77조의2 제2항의 회원 임의 가입조항을 삭제하고 별도 조문으로 강제가입 조항으로 규정하며, 협회를 규율하는 “정관”을 협회라는 조직에 맞게 “회칙”이라는 표현으로 개정함.

③ 공증인 입회 의무 신설(개정안 제77조의3)

○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은 반드시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인가공증

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도록 함.

- 또한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준회원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공증 업무를 수행하는 공증담당변호사의 책임성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직업적 책무를 고양하고자 함.

④ 협회의 자문과 건의 조항 신설(개정안 제77조의4)

- 협회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공증사무와 관련된 개선을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증업무의 개선 및 발전과 관련된 협회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함.

⑤ 협회의 회원 연수 의무 신설(개정안 제77조의5)

- 협회는 공증인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준회원을 포함한 회원 및 그 보조자를 상대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증실무의 내실화와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함. 공증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는 종전에 협회가 간헐적으로 실시해 오던 공증인보조자 교육에서 더 나아가 모든 공증인에게까지 자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공증서비스의 향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연수교육의 시간과 방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하도록 했으며, 협회는 매년 연수교육 실시상황과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연수교육을 의무화함.

⑥ 공증서류 통합 보관시설 설치 규정 신설(개정안 제77조의6)

- 협회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증인을 대신하여 공증서류를 통합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보관의 대상 서류·절차·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하도록 함.
- 이는 공증사무소가 해산할 경우 공증서류의 보관 및 이관과 관련하여 현재는 강제적으로 법무부에서 인근 공증사무소에서 이를 인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류량이 방대할 때에는 이를 인수받는 공증사무소에서도 보관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음.
- 각 공증사무소에서도 사무실 임차비용이 현저히 높아지면서 서류보관창고 유지, 확대에 따른 비용 지출이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각 공증사무소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으로 협회 차원에서 통합,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신도리코, LG CNS 등의 전자문서보관, 서울 근교의 유상 서류보관 창고 등).

⑦ 협회에 대한 법무부 감독 신설(개정안 제77조의7)

- 현행과 마찬가지로 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이에 더하여 타 전문 자격사 단체와 마찬가지로 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 보고의무를 지니며, 이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

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이는 공증인 협회의 자율성 보장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음
- ⑧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 위임 가능 규정 신설(개정안 제78조 제2항)
 - 공증인에 대한 감독은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나, 감독권의 일부를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의 위임이 있을 경우 협회 차원에서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이로써 공증업무의 감독권을 법무부 자체만으로 실시하는데 따른 인력과 시간 부족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하여 실질적인 공증업무 감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⑨ 협회 회칙 위반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개정안 제82조)
 - 공증인이 공증인법 및 공증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 또는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외에도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함하여 협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
 - 또한 협회는 공증인에게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⑩ 경과 규정(개정안 부칙 제5조)
 - 개정법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증협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로 보며,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법과 대통령령에 따른 회칙과 조직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공증협회의 강제단체화에 대한 토론문

장 재 형

인하대학교 법대 교수 · 변호사

1. 머릿말

반세기간의 공증인법 개정애 즈음하여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접하게 되어 많은 생각을 떠오르게 하였고, 그중 공증협회의 임의단체에서 의무가입 강제단체화로의 개정 부분은 논자가 2003년부터 만4년간 대한공증협회 총무이사로 일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신선하고 시의적절하게 느껴진다. 그런 한편 좀더 반영되었으면 하는 점도 있어 이 토론에 기꺼이 참여하게 되었다.

2. 협회의 명칭과 목적 (제77조의2)

공증협회의 명칭을 '대한공증인협회'로 바꾸는 것은 전문직으로서의 공증인의 직함을 협회명칭에 부각함으로써 적절한 것이라 하겠으나, 그 목적에 있어서 중전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공증업무의 개선과 통일」에서 나아가 「공증업무의 개선과 발전 기타 공증법률문화의 창달도모」를 덧붙이고, 「공증업무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공증업무의 지도 및 감독」으로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3. 입회의무 (제77조의3)

(1) 가입의무 강제단체화

발표주제 내용처럼 대국민 홍보와 서비스향상, 업무의 통일과 개선 · 발전, 자체 교육연수 등 전문화, 그 외 국제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공증업무의 발전과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는 국가사무위임에 따른 공증업무자체의 공공성과 적정수수료의 엄격한 통제에 비추어 달리

시장경제나 자율성을 내세우는 규제완화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 하겠다.

(2) 인가공증의 대표자와 협회의 회원자격

개정안은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협회회원으로 하고, 공증담당변호사를 준회원으로 하고 있으나,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와 인가공증인의 대표자가 서로 분리된 별개의 지위로 규정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지위인 경우에는 법무법인과 법체계상의 조화도 애매하며, 또 준회원은 그 의의나 역할, 권리나 의무와 관련하여 법률적의미가 미약하다.

논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법무부에 신고된 각 공증담당변호사를 회원으로 하고 대표자만 선정하는 것이 협회의 본질에 맞다.

(3) 회칙과 관련

법률에 회원의 회비납부의무와 이와 관련하여 독일처럼 협회의 회비납부고지서에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권원을 인정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협회의 본격적인 기능과 역할을 위하여 조직의 정비, 재정의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과정이므로 상징적인 면에서도 중요하다.

4. 회원연수 등 (제77조의5)

제77조의6의 공증서류 통합보관시설의 설치·운영과 마찬가지로, 대한공증협회의 현재의 조직, 운영, 재정, 회원들의 인식과 참여도 등에 비추어 당장 모든 연수의 전면적 실시와 보고의 의무화는 시기상조이다.

신임 임명공증인이나 최초로 신고하는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한 교육연수는 바로 법정·의무화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기존 회원이나 보조자에 대한 기본연수 또는 전문연수 등의 교육은 협회의 조직과 기능 활성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됨이 바람직하다.

5. 협회의 조직 (제77조의8)

개정안에 의하면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운영 등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것으로 모두 위임하고 있으나, 협회의 조직에 대하여는 이는 후술하는 징계위원회 구성 등과 더불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6. 공증사건 공동관리제 등의 도입

공증협회의 조직·기능 활성화와 재정확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증사건 중 일부 예를 들어 공증증서 유언의 경우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협회에 특별회비로 기부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해 유언공증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의 제출 등을 절차상으로 강제하여야 한다. 이는 앞으로 공증협회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공증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 필요한 일시적·잠정적 조치이다.

향후 협회가 정상화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건공동관리제는 폐지하고 그 대신 공증사건 수임관련 자료의 전면적 제출과 수입금액에 따른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징구하여 건전한 재정을 확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문가단체로서 회원의 복지나 공증서류종합보관시설 등 관련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국제화, 선진화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7. 감독과 징계 관련

(1) 징계개시절차 (제82조)

개정안에서 비록 징계권은 협회에 이관되지 아니하였으나, 협회의 징계사유보고와 관련하여 협회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징계사유를 보고함에 있어서 그 사전절차로서 징계사유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협회 자체의 조사기능이 부여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협회에 징계와 관련된 조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고, 나아가서 이를 단순히 보고로 할 것이 아니라 징계개시신청으로 바람직하다.

(2) 징계위원회 등 (제85조)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법률에 직접 규정함이 법체계상 타당하고, 또 징계와 관련하여 피징계자의 출석·진술권 등 심의절차와 징계위원의 제척사유, 징계의결의 결의방법, 통지, 불복절차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직무정지 (제86조)

먼저 직무정지의 요건에 있어서 신분에 관한 구속·불구속을 구분하거나 구류를 당연직무정지 사유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어 부당하고, 또 단순히 공소제기나 징계절차의 개시를 그 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법리에 반하거나 과잉규제의 잘못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한으로, 변호사법 제102조와 같이 공소제기(약식명령이나 과실범을 제외)나 징계절차의 재판이나 징계결정의 결과 1년 이하의 정직 또는 해임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직무정지기간에 있어서도 공판절차나 징계절차 종료시까지로 무조건 장기간으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일단 6월로 하고, 상황에 따라 3월씩 갱신할 수 있되 2년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함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실효에 관한 규정은 물론, 업무정지 기간의 갱신과 아울러 이에 대한 불복절차에도 징계결정의 경우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8. 결 론

공증업무의 개선과 발전 기타 공증법률문화의 창달도모, 공증업무의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공증협회를 종전의 임의단체에서 의무가입 강제단체화로 하고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나, 공증협회의 현황에 비추어 조직의 구성과 기능 특히 이를 위한 재정의 확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상당히 미비하고, 아울러 이에 따른 연수교육이나 관련 사업이 단계적이지 못한 점도 있다.

또한 감독이나 징계에 관하여도 다른 법과 비교하여 관련절차나 제도가 정비되지 못하여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와 공증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해 공증인협회의 역할은 중차대하므로 이번 개정안이 위와 같은 부분뿐만 아니라 그 외에서도 신중히 결정되어야할 점이 많다.

공증인법개정안에 관한 의견

권 오 창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 변호사

1. 머릿말

이번의 공증인법 개정안은 급속히 변화하는 거래현실과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자문서의 출현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현행 공증인법과 비교하여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며,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래에서는 몇가지 사항에 관한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2. 공증인 체계의 일원화 및 자격기준 강화에 관하여

임명공증인, 공증인가 법무법인(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포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증체계를 일원화 하는 문제는 종전부터 몇차례 검토된 바 있습니다. 즉,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공증사무취급에 관한 규정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변호사검업공증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증인제도를一元化하려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대한변호사협회로서는, 현재 법무법인 등이 공증사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변호사검업공증인제도를 폐지하고 임명공증인으로一元化하는 것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임명공증인으로 일원화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공증업무가 개선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현재 공증업무에 대한 감독소홀 등의 문제는 공증인가를 엄격히 하고, 감독강화 등의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장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공증인 제도는 임명공증인과 법무법인 등으로 二元的으로 유지하면서도, 현행 변호사법상의 공증에 관한 규정을 공증인법으로 흡수하여 법률 체계를一元化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음으로 공증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서는 공증인의 임명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증인의 정년을 75세로 규정하고, 임명자격 기준을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사람으로 하고, 아울러 법무법인 등의 경우에 법무법인 등의 설립인가와는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5년 단위로 재인가할 수 있도록 공증인가의 요건을 강화한 것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을 감안한 것으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최근 평균수명의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점, 공증업무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의 경우 일정한 노력에 달한 후에도 그 업무를 수행함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이 현실인 점, 2007. 12.월 현재 전국에 개업 중인 변호사 8,152명 중 65세 이상이 877명으로 14%, 그 중 75세 이상이 251명으로 3%에 이르고 있는 점, 또한 현재 공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보호 등을 검토하여 공증인의 정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과조치를 두는 등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선서인증 및 전자공증에 관하여

현행의 공정증서작성이나 사서증서 인증방식만으로는 현재의 거래관계나 법률관계에 필요한 사인간의 거래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충분한 공증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거래현실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거래가 급격히 확산되어 가고 있음에 비추어, 전자거래에 대한 공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안에서 선서인증과 전자공증을 도입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서인증제도는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절차를 효율화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선서인증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선서능력, 선서방식, 허위선서의 제재에 관한 고지절차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제재의 수위에 대해서도 좀더 폭넓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선서인증의 경우에는 종전의 사서인증 등과는 구분하여 수수료액을 현실화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공증협회의 강제단체화와 관련하여

공증협회의 강제단체화는 나름대로의 논리와 장점이 있으나, 공증사무가 일원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증협회의 강제단체화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증업무는 변호사업무 등 다른 전문직과는 달리 본래 국가사무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증협회를 만들고 거기에 국가의 감독권의 일부 위임한다는 접근방식도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5. 맺는말

이번의 개정안은 공증제도의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제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한이나 일정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거쳐 신중하게 향후의 입법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증인법의 개정에 관하여

김 상 일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예방사법의 꽃 : 공증인과 공증업무

계약형성론(Vertragsgestaltung, Legal Drafting)의 중요성

II. 우리의 현실 : 변호사면 누구나 하는 것

1970년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이후

III. 공증인의 업무와 변호사의 업무는 다르다 !

1. 불편부당한 조력자 ↔ 당사자의 이해 관계 대변인

○ 변호사직과 공증인직의 구별에 관한 독일연방공증인회(Bundesnotarkammer) 자료에서의 설명

“공증인은 특별한 종류의 변호사가 아니다. 공증인직은 또한 변호사에 대하여 주어지는 추가적인 자격도 아니며 변호사를 위한 특수한 분야도 아니다. 변호사직과 공증인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wesensverschieden).

변호사는 법률상담시장에서 전통적인 자유직업이다. 모든 법률가는 변호사로 허가받는다. 변호사의 임무는 법원이나 행정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위임인(고객)에게 상담하고 대리하는 것이다. 이 때 변호사는 오로지 자신의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한다. 위임인의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거나 양자 사이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배반이며, 이는 징계절

차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변호사는 위임인의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근거하여 활동한다.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변호사는 위임인의 위임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의 보수는 독자적인 변호사보수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변호사는 합의에 의하여 위 법규정과 다른 보수(시간급)를 정할 수도 있다. 변호사는 그 직무활동을 종료할 경우 직무상의 거래고객이나 영업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하여 공증인은 독립적인 공적 직무의 담당자로서 공법상의 시보기간을 거친 후에 국가의 사법행정기관에 의하여 선임된다. 공증인에게는 임지로서 일정한 지역이 배정된다. 사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의 공증인만이 선임된다. 공증인지원자는 공고를 통하여 최고 성적원리에 따라 선발한다. 공증인은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관계인에 대하여 獨立的이고 不偏不黨한 조력자(Betreuer)이다. 공증인이 이 중립성을 침해하면 직무상의 의무침해가 된다. 공증인은 또한 직무집행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증서작성위임을 거부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공증인의 직무활동은 고객과의 사법상의 계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법관과 유사하게 공증인은 국가에 의한 감독과 사법행정기관에 의한 징계의 대상이 된다. 공증인은 형법상으로 고권담당자(공무원)와 같이 취급된다. 공증인이 직무상의 의무를 침해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원칙이 적용되며, 고객과의 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공증인의 보수는 법원에도 적용되는 비용법에 따라서 산정된다. 공증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상 확정된 보수와 달리 보수를 정할 수 없다. 공증인직을 그만 두면 공증인직은 소멸하는 것이며 그 양도는 불가능하다. 변호사와는 달리 공증인은 자신의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그 독립성과 불편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많은 제약을 받는다(<http://www.bnotk.de/suche/indexsuche.htm>의 Notare in Europa, 7~8면)."

2. 공증업무는 국가사무다. 따라서 공증인은 한국인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추40 판결【마산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권의 범위 밖이라고 할 것이다.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후단 소정의 확정일자와 관련하여 읍·면·동·출장소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업무 및 읍·면·동·출장소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전입신고 수리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에 관하여 고지, 안내, 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는 기관위임사무이다.

■ 서울고법 1975.7.11.75나425

공증인은 공증인법 2조, 10조, 11조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의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2조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IV. 이상적인 공증인상은 전업공증인이어야 함.

- 우리나라의 공증서류의 국제적 통용성의 증대를 위하여도 겸업공증인보다 전업공증인이 더 유리한 것으로 보임.

V. 겸업공증인이라도 전업공증인과 같은 정도의 규율이 필요

1. 개정법안에 찬성

- 그런 의미에서 공증인체계를 일원화하고 공증사무의 적정을 확보하고자 공증인 교육제도를 신설하고 대한 공증인협회를 강제단체화하며, 징계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법안에는 전적으로 찬성함.
- 독일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

2. 독일의 경우

- 전업공증인 1627 명, 변호사공증인 7728 명,
- 그러나 독일 전체지역의 2/3는 전업공증인이 담당

(1) 변호사공증인의 임명

- 1991년부터 변호사공증인의 자동적 임명을 제한.
- 2004. 5. 20.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차국가시험성적(90) + 대기기간(45) + 연수교육(45)

(2) 전업공증인의 임명

- 2차국가시험 + 3년간의 공증인시보 = 종신직의 공증인
- 변호사공증인은 독일 제2제국 성립이전 프로이센공국의 통지지역이거나 그 영향 하에 있었던 지역에서 활동.
- 변호사공증인의 경우 변호사직과 공증인직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나 대부분 공증인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함.
- 김황식, 독일의 공증제도에 관한 고찰, 한독법학 제3호(1982), 97면 이하 참조.
- 정태호, 독일의 공증인선발제도에 대한 개관, 인권과 정의 2004.6. 174면 이하 참조.

VI. 새로운 공증제도의 신설에 관하여

1. 미국 공증제도의 후진성

(1) 현황 : 아무런 자격요건이 없이 각주정부에서 임명되는 Notary public이 2004년 현재 약 420만명.

○ 공증관련법규를 읽어보았으며 공증인으로 선임되면 법에 따라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7000달러 내외의 일정한 보증금(일부 주에서는 보증금도 없이)을 제공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공증인으로 선임됨.

○ 변호사에 가까운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그 위반시 형사 및 민사상의 책임이 뒤따르지만 공증의 보수가 미미하기에 책임을 묻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 오히려 이들이 의무위반을 하는 경우 그들을 주로 고용하는(정확하게 말하면 변호사사무실 직원 중의 1인에게 공증인 자격을 취득시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변호사업무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임) 변호사나 그러한 의무위반을 요구한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J. Nick Badgerow, "Notarize this" : The Notary's and Lawyer's Liability for forged signatures, Journal of Kansas Bar Association September, 2004(73-SEP J. Kan. B.A.18).

○ Joel S. Thomson, Notary Public Beware, Colorado Lawyer March,2000(29-MAR Colo.Law.71).

(2) Civil Law Notary의 등장

① Florida : 1997년에 관계법 통과 2003년에 100여명의 Civil Law Notary 활동,
J. Brock McClane/Michael A. Tessitore, The Florida Civil-Law Notary : A Practical New Tool for Doing Business with Latin America, Stetson Law Review Summer 2003(32 Stetson L. Rev. 727).

② Alabama : 1999년에 관련법 통과 2001.9.26에 발효

Boyd F. Cambell/Ponald G. Neiworth, Civil Law Notaries : Something New in Alabama, Alabama Lawyer May, 2003(64 Ala. Law 169).

③ 국제라틴공증인연합(U.I.N.L.)에서 전업공증인제도의 채택을 권유

④ Illinois, Texas주에서도 Civil Law Notary의 도입을 검토 중

2. 독일 공증제도를 참고할 필요

VII. 공증인이 생활 속의 조력자가 되기 위한 선결요건

1. 공증의 대면업무성이 강조되어야 함(공증업무의 핵심부분에 대한 본직 요건).

○ 본인확인 → 사서증서의 인증 → 공정증서의 작성 → 당사자에 대한 설명의무(교시의무)

2. 공증인과 공증보조자 사이의 업무한계 설정 필요성